



경기도

OmBudsMan

2021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

경기도 옴부즈만



2021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

Contents

01

개관

제1절 추진배경	08
제2절 음부즈만 현황	09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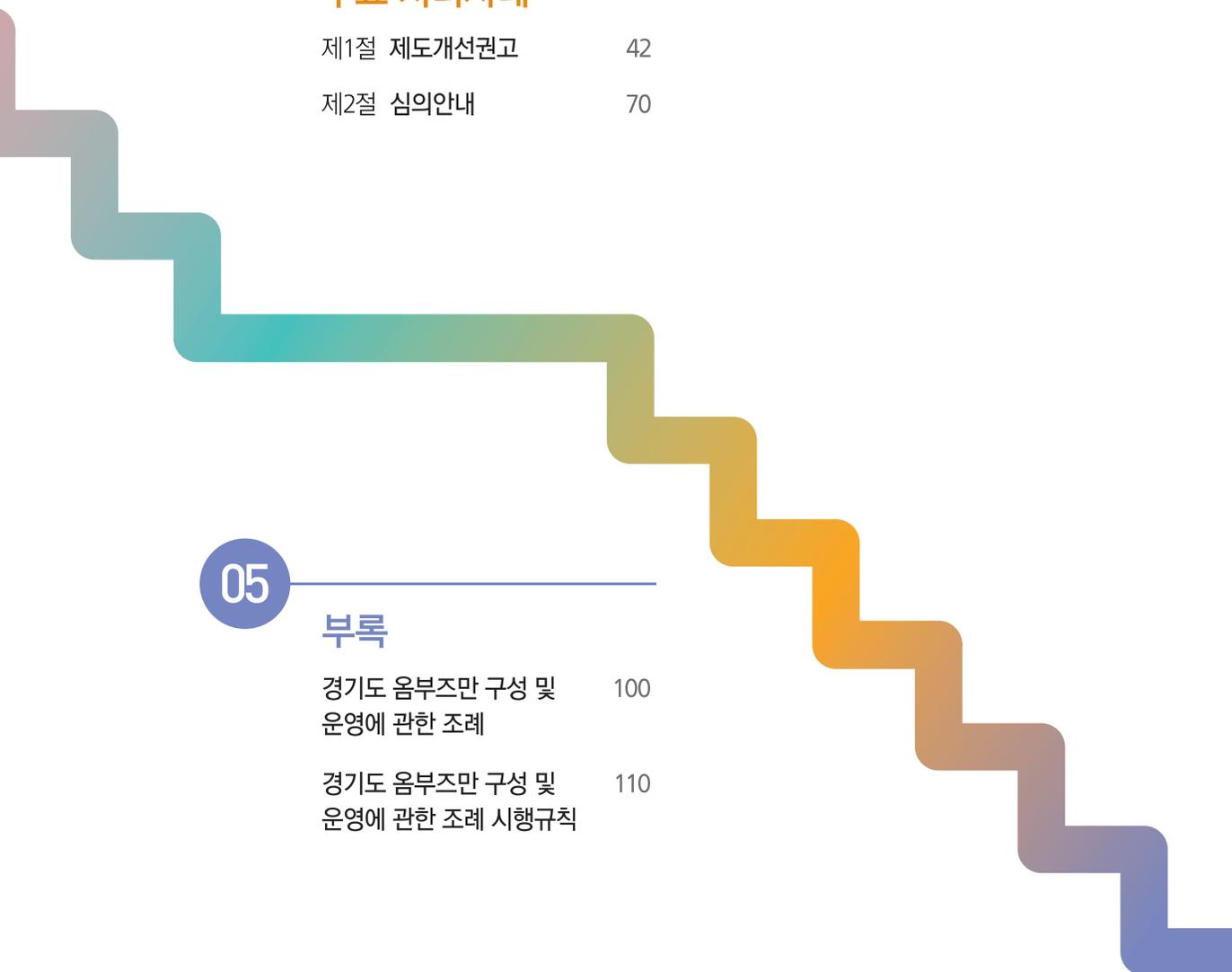
구성 및 운영

제1절 구성 및 기능	12
제2절 운영	15

03

운영성과

제1절 고충민원 처리 현황	24
제2절 홍보현황 및 활동모습	33



04

주요 처리사례

제1절 제도개선권고	42
제2절 심의안내	70

05

부록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0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10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

옴부즈만은 도민이 도정 전반에 대해 고쳐야 할 점이나 불편한 점, 잘못된 점을 알리면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공정, 평화, 복지'라는 경기도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스웨덴어에서 유래한 옴부즈만은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국민의 대리인'을 가리킵니다. 국민을 대신해 행정을 통제하고, 국민과 행정기관의 분쟁을 조정·중재하며,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개혁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분들, 대학 교수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여온 실천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고충민원의 처리는 물론, 고충민원 발생의 근본 원인을 없애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Ombuds Man



2021년은 경기도 옴부즈만 제4기가 막 구성돼 활동을 시작한 해입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지난 한 해 동안 옴부즈만 조사·심의 민원 10건과 사무국 처리 민원 70건을 합하여 총 80건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적지 않은 제약이 있었지만, 현장 밀착형 조사 활동과 실효성 있는 구제 활동을 벌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작은 성과라도 거둘 수 있었다면 이는 오로지 도민들의 참여와 협조, 그리고 경기도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입니다. 특별히 옴부즈만팀에서 애쓰시는 김영옥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2년에도 경기도 옴부즈만은 성실하고 진취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제기된 고충민원의 해결을 넘어서, 비슷한 고충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폭넓게 고민하고 개선의 길을 찾겠습니다. 경기도 행정이 도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경기도민들이 공정한 대우와 일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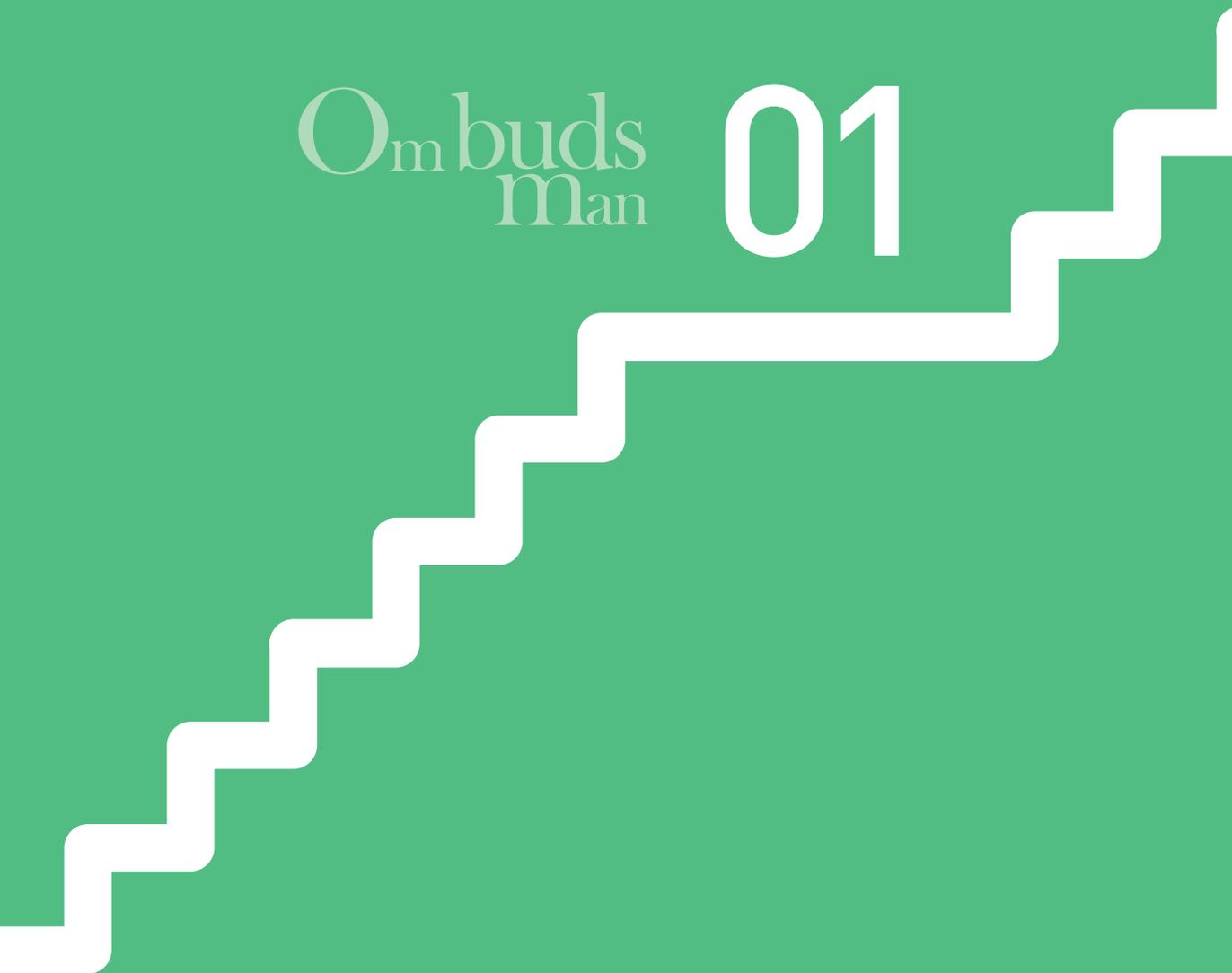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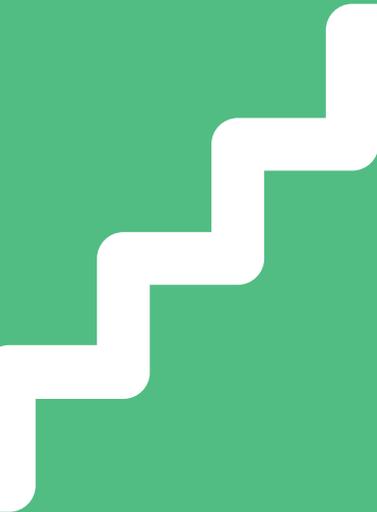
2021년 1월

경기도 대표 옴부즈만 **임주환** 올림

Ombuds
Man

01





개관

제1절 추진배경

제2절 ombudsman 현황

복지국가 지향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따른 행정권 강화와 행정재량의 복잡·다양화 현상은 전 세계적 추세로, 이에 따른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 역시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 입법·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으로는 새로운 행정문제와 다양한 고충민원들을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 권리구제 수단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처음 창설된 옴부즈만 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대리인이 국민을 대신하여 이를 신속히 조사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여 주는 제도를 뜻한다.

옴부즈만 제도는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통제하며, 국민과 행정기관과의 분쟁을 조정·중재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며, 법규의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하는 행정기관에게 시정권고 하고, 행정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며, 행정개혁을 촉진하여 법이 규제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 옴부즈만(Ombudsman)이란? |

■ 고대 스웨덴어 *ombudsmann**에서 유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원에 의해 결정된 배상금을 손해를 입힌 자로부터 받아서 손해를 입은 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를 나누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의미

현재는, “국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을 의미

경기도는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행정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2013년 11월 11일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2015년 1월 17일 1기 옴부즈만을 시작으로 2021년 5월 10일 4기 옴부즈만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임주환 | 대표 옴부즈만

- 현) 희망제작소 소장
- 전) 한겨레신문 기자



지영림 | 부 옴부즈만

- 전) 시흥시 시민호민관
- 전) 서울시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4급 개방형)



김안태

- 전) 권익위 심사기획과장
- 전) 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수급신고 센터장



김인숙

- 현) 법무법인 엠 변호사
- 현) 경기도 고문변호사



김정인

- 현) 수원대학교 부교수(법행정학부)
- 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



김희란

- 현) 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 현)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하주희

- 현) 로펌 올림 변호사
- 현)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 위원



황종일

- 현) 대한감정기술원 대표
- 전) 수원도시공사 비상임이사



황지연

- 전) 경기도 옴부즈만 (1기 대표)
- 전) 안양시 민원 옴부즈만

Ombuds
Man

02





구성 및 운영

제1절 구성 및 기능

제2절 운영

옴부즈만의 구성

경기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내지 제37조 및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옴부즈만은 도지사 소속 하의 행정부형 옴부즈만이며, 복수의 옴부즈만이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형태로 운영된다. 옴부즈만 위원은 임기 2년의 비상임 위촉직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추천이 끝난 후 자동으로 해산된다.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이며, 위원은 고충민원 업무 담당 국장·변호사·교수·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옴부즈만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회의를 통해 옴부즈만을 결정한다.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옴부즈만은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 등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옴부즈만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다.

자격 요건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감정평가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결격 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

옴부즈만은 도 본청 및 소속기관,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군 본청 및 소속기관,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처분 등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옴부즈만의 기능

옴부즈만은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 옴부즈만 스스로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 다수인민원·공공갈등민원·복합민원 등의 고충민원 등을 조사·처리하여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관련 행정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며 고충민원을 조정·중재한다. 그 외에도 도지사 및 도의회에 옴부즈만 운영 및 직권조사에 대하여 보고하고,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실시하며,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단체 등과 협력하고 지원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옴부즈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각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옴부즈만은 행정처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인의 주장을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사·통제하고, 법적·행정적 소송절차보다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하게 됨으로써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한 번 결정되면 그 결정을 선례로 삼아 이를 지속하려는 행정의 관성을 깨뜨려 위법·부당한 행정관행을 개선되도록 자극하며, 특별한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옴부즈만의 특성인 ‘부드러운 법률(soft law)’의 적용을 통해 행정의 변화를 도모한다.

사무국

도지사는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019년 3월 13일 사무국을 설치하였고, 4기 옴부즈만으로 위촉(2021.5.10.)된 옴부즈만 중 1인이 사무국장으로서 활동하여, 최초 고충민원 접수부터 안건의 상정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의 관할에 놓이게 되어 옴부즈만 활동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였다. 사무국 업무는 조사담당관실 옴부즈만지원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인력은 총 4명이다. 사무국은 고충민원의 안내·상담·접수 및 민원 조사·처리 지원, 옴부즈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옴부즈만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고충민원 편람·서식 등의 보관, 그 밖의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고충민원의 정의

| 고충민원이란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고충민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집행행위,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 공권력적 행위, 공권력 행사의 거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뿐 아니라 행정처분은 아니지만 그것이 위법·부당하여 민원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이 되는 행정청의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해당한다. 또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법에 규정된 민원사무처리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부작위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민원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 및 행정기관의 시책 등도 이에 포함된다.

고충민원은 사안이 개별적이고 다양하며 예외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한 구비 서류나 절차·처분요건 등을 규정하기 어렵고, 내용·절차가 복잡하여 전문성 및 여러 행정기관의 협조와 조정이 요구되며,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성이 있다.

고충민원의 신청

고충민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개인·법인·단체 누구든지 신청 할 수 있다.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

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등을 기재하여 ombudsman 사무국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민원을 접수한다.

- 직접 방문 및 우편접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조사담당관실 ombudsman운영지원팀 (우 16444)
- 전자메일 : ombudsman@gg.go.kr
- 팩스 : 031-8008-2789

고충민원 처리

 <p>고충민원의 신청 접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충민원 처리 대상 여부 판단
	
 <p>조사관 등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분야를 고려하여 담당조사관 지정 ※ 사무국장 전결 처리 : 이첩, 각하, 반려 등
	
 <p>기초자료 조사 작성 및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신청인 검토의견 및 민원현장 등 확인
	
 <p>민원조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ombudsman 지정 - 민원인 면담, 피신청인 의견청취, 법령 검토, 현장 방문 등
	
 <p>ombudsman 회의(심의·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mbudsman 과반수 출석의 합의제 운영 •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 결정
	
 <p>결정내용 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일 이내에 신청인 · 피신청인 모두 통지
	
 <p>처리결과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일 이내 관계기관 조치계획 또는 이행결과 회보
	
 <p>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행정기관의 이행실태 확인 · 점검

처리방침의 결정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먼저 접수된 민원을 검토하여 옴부즈만에서 조사·심의할 사안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옴부즈만은 접수된 민원이 옴부즈만의 관할권 밖에 있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로 이첩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사인 간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

| 각하대상 민원 |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도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서 정한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민원의 이첩과 종결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때 옴부즈만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첩하는 행정기관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요청한다.

옴부즈만은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2회 이상 알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같은 사람이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결처리하고,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또한 민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은 고충민원 역시 종결처리할 수 있다.

민원 처리 기간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처리 기간은 60일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계산 시,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신청서 보완·문서 이송·대표자 선정·의견 청취·감정 및 자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민원조사

옴부즈만의 조사는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옴부즈만은 민원의 조사·심의를 위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민원발생·처리경위, 처리의견·계획, 기타 현황자료 등에 관하여 자료 등을 제출받고, 피신청인·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을 통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의뢰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옴부즈만은 접수된 민원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할범위에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합의와 조정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하여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권유)할 수 있다. 합의 권고 또는 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합의에 참여한 사무국장이나 조사관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옴부즈만이 확인함으로써 합의가 성립된다.

옴부즈만은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옴부즈만 회의

옴부즈만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례회에서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방향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옴부즈만을 지정하여 민원에 대하여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며, 조사한 민원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심의·의결

옴부즈만 회의에서는 조사·심의하기로 한 민원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한다. 옴부즈만은 안건 민원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시정 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권고·제도개선의견표명, 심의안내 등의 내용으로 결정한다.

| 결정내용 |

- **시정권고**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견표명**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권고, 제도개선의견표명**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합의**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 **심의안내** 신청인의 민원사항과 관련한 행정절차나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처리결과 통지

옴부즈만은 민원의 결정 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결정 내용이 권고나 의견표명인 경우에는 의결에 참가한 옴부즈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의결서의 형태로 통지하며, 결정 내용이 권고·의견표명 외의 경우에는 안내 회신문의 형태로 통지한다.

옴부즈만으로부터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단체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피신청인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재심의

피신청인은 옴부즈만이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

의할 수 있다.

옴부즈만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재심을 요청받아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재조사하여야 한다. 대표옴부즈만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 재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한다.

사후관리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처리결과의 실효성 확보 및 옴부즈만 기관의 대국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사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옴부즈만은 피신청인의 시정조치 및 권고 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그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한다.

감사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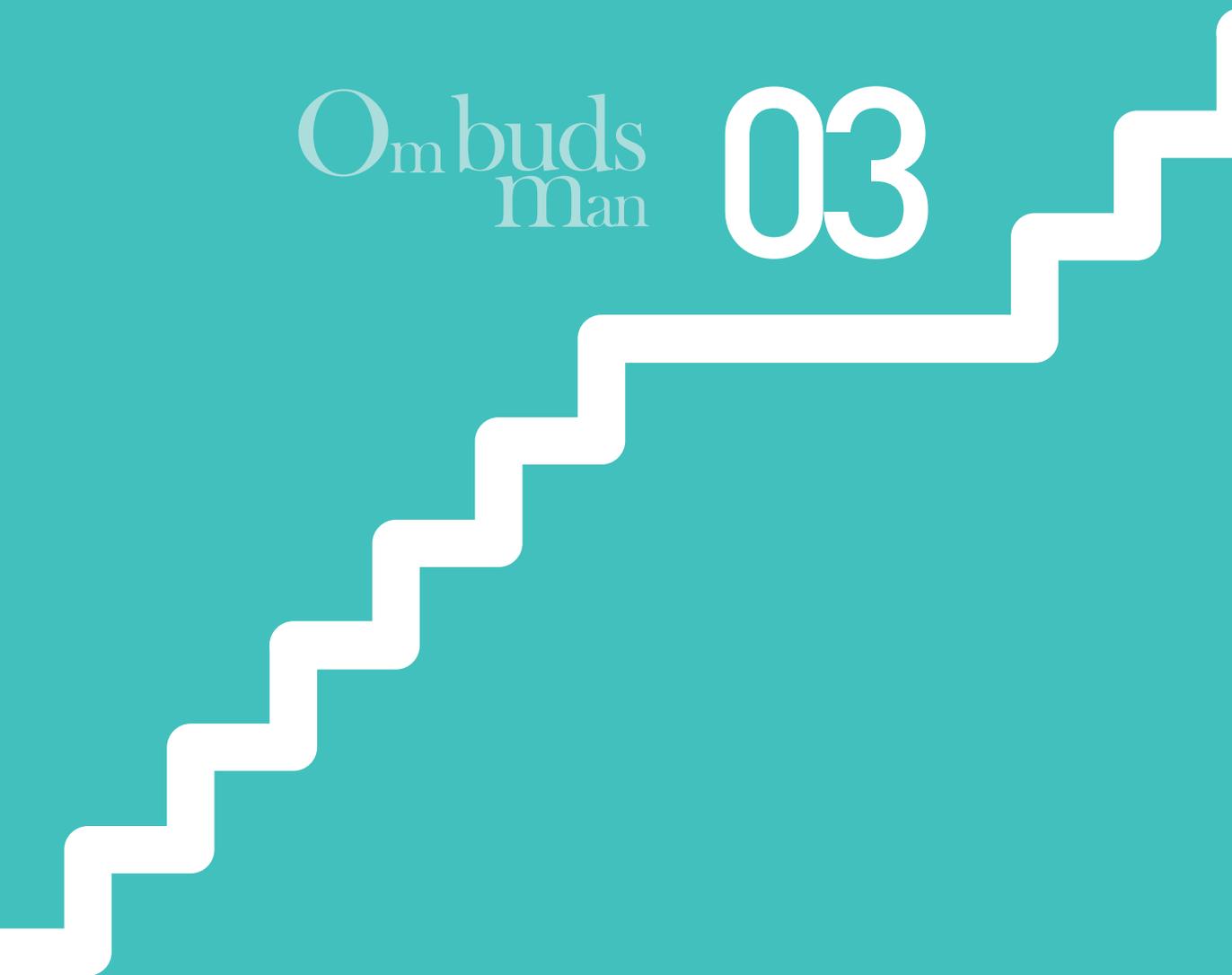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피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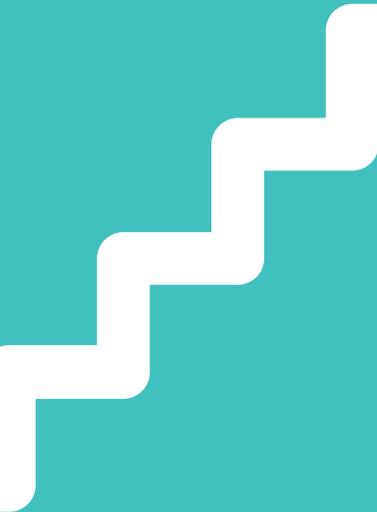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 옴부즈만이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내용, 관련 부서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매년 운영상황을 도지사 및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한다. 이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및 도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Ombuds
Man

03





운영성과

제1절 고충민원 처리 현황

제2절 홍보현황 및 활동모습

고충민원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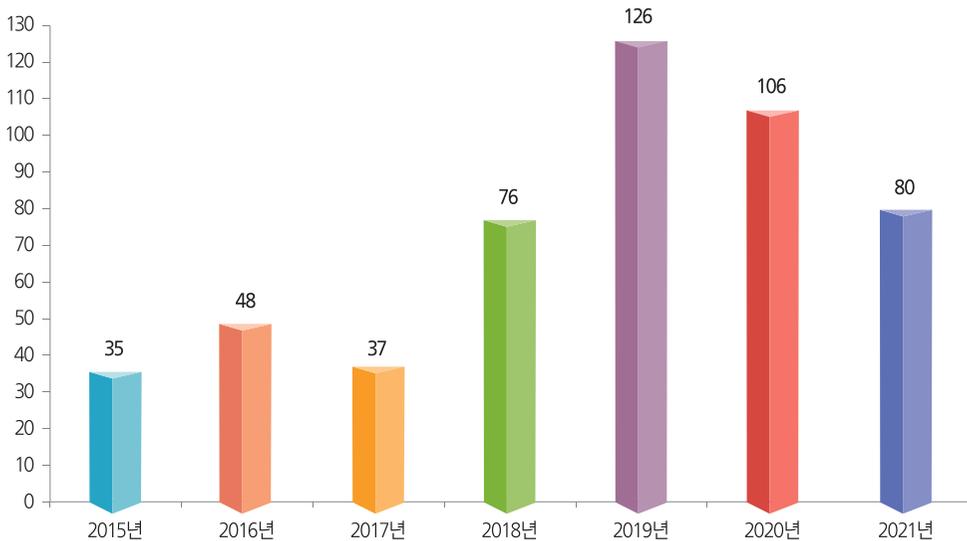
총괄

경기도 옴부즈만은 2015년 1월 27일 출범 이후 2021년 12월 31일에 이르기까지 총 508건의 민원을 조사·처리하였다.

옴부즈만은 출범 첫 해인 2015년 35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48건, 2017년 37건, 2018년 76건, 2019년의 126건, 2020년 106건, 2021년 8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다.

[2015년~2021년 옴부즈만 연도별 처리 결과 현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08	35	48	37	76	126	106	80



옴부즈만 조사·심의 민원은 128건으로, 제도개선권고 29건, 시정권고 10건, 의견표명 35건, 조정 2건, 심의안내 52건이었다. 사무국 처리 민원은 380건으로 해결 28건, 취하 9건, 각하 105건, 이송이 238건이었다.

[2015년~2021년 옴부즈만 처리 결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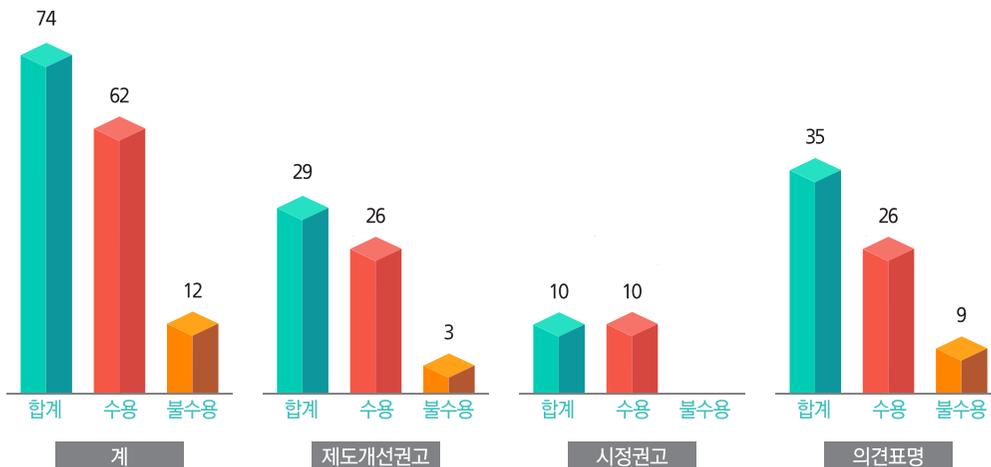
계	옴부즈만 심의(128건)					사무국 종결(380건)			
	제도개선권고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심의안내	해결	취하	각하	이승
508	29	10	35	2	52	28	9	105	238

옴부즈만에서 제도개선권고 및 시정권고, 의견표명한 민원은 총 74건으로, 이 중 피신청인이 수용한 민원은 62건이다.

옴부즈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총 수용률은 84%로, 제도개선권고 민원은 29건 중 26건이 수용되어 90%의 수용률을, 시정권고 민원은 10건 중 전체 10건 모두 수용되어 100%의 수용률을, 의견표명 민원은 35건 중 26건이 수용되어 74%의 수용률을 기록하였다.

[2015년~2021년 옴부즈만 처리 결과 수용 현황]

결정사항	계	제도개선권고	시정권고	의견표명
계	74	29	10	35
수용	62	26	10	26
불수용	12	3	-	9



2021년

경기도 옴부즈만은 2021년 한 해 동안 옴부즈만 조사·심의 민원 10건과 사무국 처리 민원 70건을 합하여 총 80건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였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분야 민원이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기타 분야 18건, 도시건축 분야 13건, 도로교통 분야 6건, 사회복지 분야 5건 순이었다.

[2021년 옴부즈만 분야별 처리 결과 현황]

계	일반행정	도시건축	도로교통	사회복지	기타
80	38	13	6	5	18



옴부즈만 조사·심의 민원은 10건으로 제도개선권고 5건, 심의안내 5건이었으며, 사무국 처리 민원은 70건으로 해결 1건, 취하 2건, 각하 22건, 이송 45건이었다.

[2021년 옴부즈만 처리 결과 현황]

계	옴부즈만 심의(10건)					사무국 처리(70건)			
	제도개선 권고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정	심의 안내	해결	취하	각하	이송
80	5	-	-	-	5	1	2	22	45

2021년 ombudsman에서 제도개선권고 및 시정권고, 의견표명한 민원 총 5건 중 피신청인이 수용한 민원은 3건이었으며, 불수용한 민원은 2건이었다.

피신청인이 ombudsman의 권고 및 의견을 수용한 주요 사례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II) 등 자동중지 복지서비스 안내 방안',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단 대상자 구제',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처분유예 관련 법령개정 건의 등'이 있다.

[2021년 ombudsman 처리 결과 수용 현황]

결정사항	계	제도개선권고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계	5	5	-	-
수용	3	3	-	-
불수용	2	2	-	-

[2021년 옴부즈만 민원 처리 내역]

연번	민원명	소관부서/ 기관	처리결과	비고
1	수해복구 준공제방에대한 원상복구 취소 및 하천기본계획수립 변경요청	하천과, 여주시	완료	심의안내
2	김포 양촌일반산업단지 매입 토지 대금 관련 지연이자 탕감 요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완료	각하
3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교육과정접수반려에 대한 이의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완료	각하
4	경기도 공무원원에대한 차별 및 부당한 인사조치 조사 요청	경기도	완료	각하
5	광주시 인근 공사현장에 따른 지반붕괴 위험에 대한 조사 요청	광주시	이송	광주시 소관
6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기준 역차별 개선 요청	광명시	이송	광명시 소관
7	주민등록 말소에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단 대상자 구제	장애인복지과	완료	제도개선 권고
8	(화성시) 도로 지정의 취소 및 허가취소 등	화성시	완료	각하
9	과천시 467번지, 477외 3필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촉구	과천시	이송	과천시 소관
10	국가하천 특별조치법토지보상 신청	하천과, 파주시	완료	각하
11	양평군 축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이의신청	양평군	이송	양평군 소관
12	가평군 태양광발전시설공사 피해에 따른 조치 요청	가평군	이송	가평군 소관
13	경기지역화폐 가맹점허가 신청 관련 민원	시흥시	이송	시흥시 소관
14	성남시 중1구역 직업소개업체의 영업손실보상 요구	-	완료	각하
15	지방세법 상 취득세 증과세 관련 질의	세정과	이송	세정과 소관
16	백운밸리 훼손지복구사업 이주 및 생활대책	-	완료	각하
17	용인시 건축허가 사전예고에 따른 난개발 중단 요구	용인시	이송	용인시 소관
18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폐업지원금 반환 분할납부 요청 등	소상공인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완료	해결
19	포천시 모두베기벌목사업 허가 취소 요구	포천시	이송	포천시 소관

연번	민원명	소관부서/ 기관	처리결과	비고
20	행정처분 절차상 위법성 조사 및 영업정지로 인한 기업 손해 민원	수원시	이송	수원시 소관
21	행복주택 보증금지원사업 처분 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완료	취하
22	평택시 가설건축물용도변경허가 지연에 따른 민원	평택시	이송	평택시 소관
23	화성시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법처리 요구	화성시	이송	화성시 소관
24	이천시 다세대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제기	환경부, 도환경정책과	완료	각하
25	(재심의요청)수해복구 준공제방에 대한 원상복구 취소 및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요청	경기도 옴부즈만	완료	각하
26	반려견 입양 책임분양비 환불 거부 관련 민원	성남시	이송	성남시 소관
27	폐수배출시설 미신고에 따른 사용중지 처분 부당	경기도광역 환경관리사업소	완료	각하
28	국공유지(도로) 토지 매수 및 버섯재배사 인허가 처리 요구	의왕시	이송	의왕시 소관
29	하천부지 물건(폐기물) 무단 적치 등 조사 요청	이천시	이송	이천시 소관
30	평택시 토지보상업무처리에 대한 조사 요청	평택시	이송	평택시 소관
31	가평군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피해에 따른 재조사 요청	가평군	이송	가평군 소관
32	영흥공원 비공원시설(아파트 단지)의 부출입구 검토 미흡	광역교통정책과, 수원시	완료	심의안내
33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따른 희망키움통장2 해지 관련 민원	김포시	이송	김포시 소관
34	용인시 도로공사의 행정낭비 제기 민원	용인시	이송	용인시 소관
35	고양시 고봉9통 인도 설치에 대한 문제 제기	고양시	이송	고양시 소관
36	농지원부 폐쇄 처분 취소	안성시	완료	각하
37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 탈락사유 규명 요청	노인복지과	이송	노인복지과 소관
38	수원시 영통구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조사 요청	수원시	이송	수원시 소관

[2021년 옴부즈만 민원 처리 내역]

연번	민원명	소관부서/ 기관	처리결과	비고
39	개별정화조 폐쇄 및 공공오수관 연결 요청	고양시	이송	고양시 소관
40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부당 및 과세자로 제공 요청	용인시	이송	용인시 소관
41	개별정화조 폐쇄 및 공공오수관 연결 요청2	용인시	이송	용인시 소관
42	평택시 토지보상 업무처리에 대한 조사 요청2	평택시	완료	각하
4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준 개선	청년복지 정책과	완료	제도개선 권고
44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용료 징수 관련 개인정보 유출	부천시	이송	부천시 소관
45	배수로 정비공사 관련 재정비 및 배수통로 이동 설치 요청	도로건설과	완료	심의안내
46	주택가 애견카페 소음 민원	의정부시	완료	각하
47	경기지역화폐 승인일 미고지에 따른 사용기일 경과 조사 및 구제 요청	안전기획과	완료	각하
48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II) 등 자동중지 복지서비스 안내 방안	복지사업과	완료	제도개선 권고
49	포천시 불법건축물 조사 요청	포천시	이송	포천시 소관
50	평택시 토지보상 업무처리에 대한 조사 요청	평택시	완료	각하
51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 매뉴얼 개선 요청	부천시	완료	취하
52	상하수관배설 매관시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획재정부	완료	각하
53	양평군청 건축허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양평군	완료	각하
54	철도 병점역~서동탄역 구간 방음시설 설치 요청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완료	각하
55	버들로 우정초등학교~금광아파트 구간 보도 정비 민원	화성시	이송	화성시 소관
56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체납처분유예 연장	도 자산관리과	완료	제도개선 권고

연번	민원명	소관부서/ 기관	처리결과	비고
57	애견사업장 가축분뇨배출처리시설 단속에 따른 벌금 부당함 및 손해배상 요청	남양주시	이송	남양주시 소관
58	사회복지증사자의 사회복지무요원 폭행과 관련 기관의 조직적 비호 조사 요청	성남시	이송	성남시 소관
59	과점주주취득세 취소 요청	화성시	이송	화성시 소관
60	취득세 종과세(8%) 해당 아파트 여부	세정과	이송	세정과 소관
61	공동주택 관리규약 내 동대표 해임사유 정당성 검토	평택시	이송	평택시 소관
62	동탄물류단지 부분재정비사업신청 반려처분의 구체적 사유 제시 요청	물류항만과	이송	물류항만과 소관
63	의정부 고산수자인 C3블럭 아파트 부출입구 개설 요청	의정부시	이송	의정부시 소관
6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지원횟수 제한 폐지	건강증진과	완료	제도개선 권고
65	구리시 감사담당관의 부당한 감사 진행에 대한 재조사 요청	구리시	완료	각하
66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불합격 처분 관련 기준 근거 제시 요청	인사과	이송	인사과 소관
67	포천시 토지의 도로지정에 관한 민원	포천시	이송	포천시 소관
68	용인고용센터의 고객 하대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청	고용노동부	완료	각하
69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도로점용 사용) 허가 요청	여주시	완료	심의안내
70	(안성시)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진출입 접속부 설치	도로건설과	완료	심의안내
71	(양평군) 수입1리 바치울길 진입로 선형 개선 요청	양평군	이송	양평군 소관
72	분당세무서 민원봉사실 불친절 등	분당세무서	완료	각하
73	구거 국유재산 용도폐지 요청	안성시	이송	안성시 소관
74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거부에 대한 조사 요청	화성시	이송	화성시 소관

[2021년 옴부즈만 민원 처리 내역]

연번	민원명	소관부서/ 기관	처리결과	비고
75	장애인에 대한 인감증명서 등 발급 거부 민원	부천시	이송	부천시 소관
76	조합원 모집(변경)신고의 불수리 처분	구리시	이송	구리시 소관
77	어린이 보호구역 내 빌라촌의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 요청	시흥시	이송	시흥시 소관
78	요양원 입소자 사망 관련 조사 요청	남양주시	이송	남양주시 소관
79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의 규정 삭제 요청	공간전략과	완료	각하
80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긴급지원 거부 및 갑질 신고	부천시	이송	부천시 소관

홍보현황 및 활동모습

옴부즈만은 주요 추진 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옴부즈만 공식 SNS를 개설하여 옴부즈만 제도를 소개하고 고충민원 처리절차 등을 안내하였다. 경기도 공식 블로그 및 SNS에도 글과 영상 등의 홍보콘텐츠를 게시하였고, 시·군 홈페이지에 배너 게시, G-Bus TV 동영상 홍보를 통한 온라인 및 영상 홍보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또한, 도 및 시·군 민원실에 홍보물 배포, 지역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경기도 옴부즈만 홈페이지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경기도 옴부즈만

옴부즈만 소개 옴부즈만 운영 고충민원 신청방법 처리결과

희망을 나눕니다
경기도 옴부즈만

경기도 옴부즈만 안내

경기도옴부즈만이란
경기도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기관입니다.

옴부즈만의 업무
도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장권고 또는
의견표명

경기도 옴부즈만 SNS 채널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 옴부즈만
@9XSltfcmKVbN5s

e메일 : ombudsman@gg.go.kr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제2별관 404호(사무국) gg.go.kr/ombudsman

가입일: 2020년 11월

31 팔로우 중 48 팔로워

트윗 트윗 및 답글 미디어 마음에 들어요

공정경기

고충 해결은 경기도 옴부즈만에게 맡겨주세요!

등록일 2021-04-15 | 조회수 580

해결하기 어려운 불편(민원) 사항이 있으신가요?
경기도 옴부즈만에게 맡겨주세요!

행정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겪었다면 옴부즈만에 맡겨주세요!
경기도 옴부즈만은 경기도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입니다. 변호사, 교수, 사회단체, 전직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고충, 경기도 옴부즈만이 해결합니다.

대상업무	경기도 사무에 관한 고충민원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고충민원 옴부즈만 회의에서 조사·처리하기로 결정한 민원 및 시·군 고유사무 제외
신청대상	행정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겪는 누구나

버스외부 홍보



G-Bus TV



제1장 | 개관

제2장 | 구성 및 운영

제3장 | 운영성과

제4장 | 주요 처리사례

제5장 | 부록

홍보영상 제작



경기도 옴부즈만 공식 SNS (트위터)

경기도 옴부즈만 @9XSlitfcmKVbN5s · 2021년 6월 23일
【제69차 경기도 옴부즈만 정례회 개최】

2021. 6. 17.(목) 제69차 경기도 옴부즈만 정례회를 개최하여 '경기도 청년기 본소득 지급 기준 개선' 등 2건의 고충민원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옴부즈만은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_옴부즈만 #옴부즈만



리플릿 제작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도민의 힘이 되어 줍니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옴부즈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이라도 도민의 편의를 위해 개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옴부즈만의 구성

옴부즈만은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변호사, 교수, 사회단체, 전직공무원 등



구성원 **10**명

임기 **2**년

대상기관

- 경기도 분청 및 소속기관
- 경기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대상업무

- 경기도 사무에 대한 고충 민원
-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고충 민원
- 옴부즈만 회의에서 조사·처리하기로 결정한 민원
- ※ 시·군 교육사무 제외

민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민원 신청방법

인터넷신청
www.gg.go.kr/ombudsman

우편신청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제2별관 4층 경기도 옴부즈만 사무국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방문
 경기도 옴부즈만 사무국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접수 시간 : 평일 09:00~18:00

신청서 서식 온라인 다운로드
www.gg.go.kr/ombudsman

4기 옴부즈만 활동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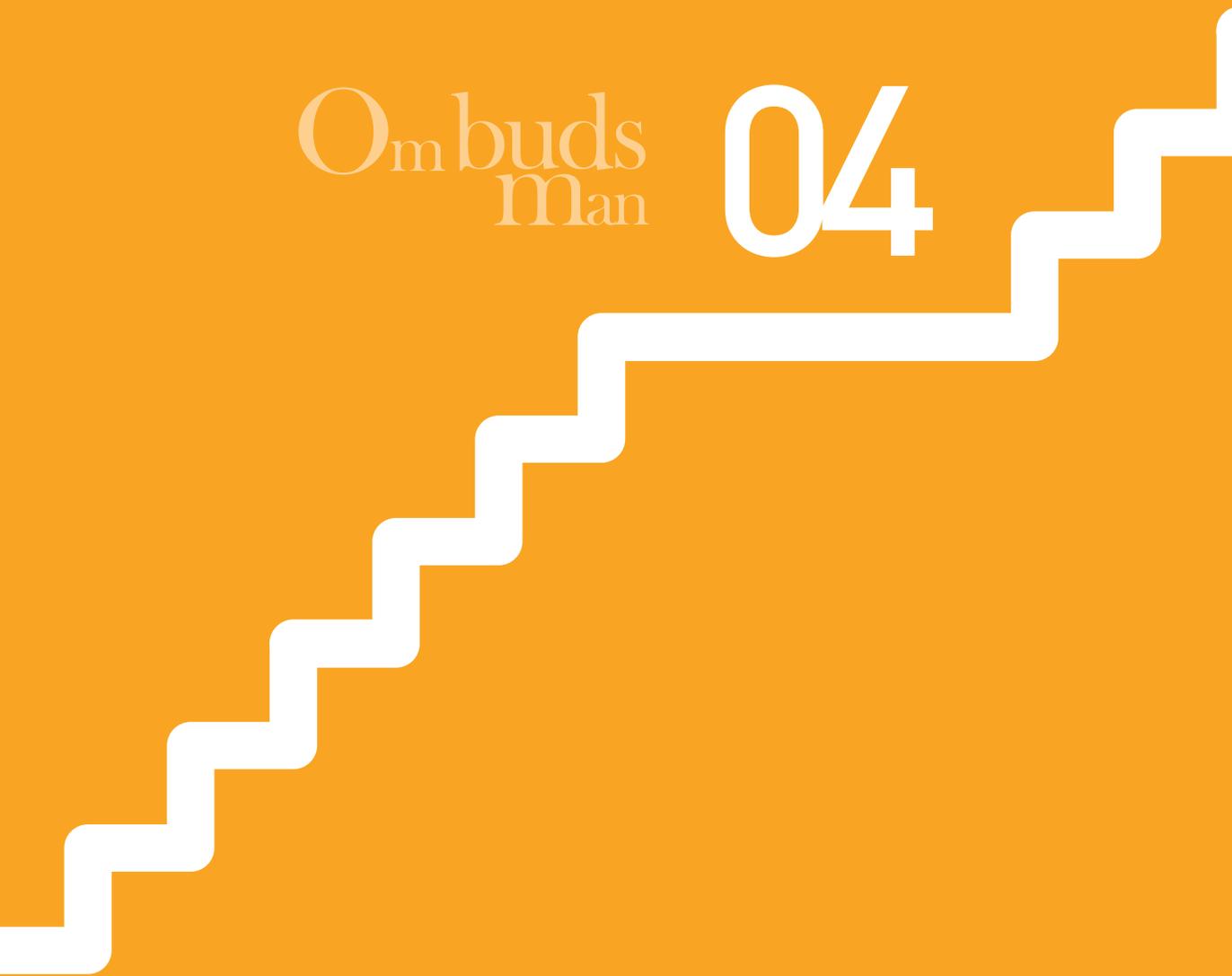
경기도 옴부즈만 정례회



현장조사

Ombuds
Man

04





주요 처리사례

제1절 제도개선권고

제2절 심의안내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단 대상자 구제

피신청인

경기도지사(장애인복지과)

현 황

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식사나 세면 등의 일상 생활 도움이나 외출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사회서비스이다.

나. 활동지원급여 체계는 전자바우처 시스템¹을 통해 수급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수급자는 서비스에 대해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업 제도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서비스 연계 등록에 있어서의 지침 상 미비점으로 인해, 활동보조서비스가 꼭 필요한 중증장애인임에도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사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전자바우처 :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의 한 형태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제공기관)에서는 서비스 비용을 사후에 지불하는 방식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제3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32조 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헌법불합치, 2017헌가22, 2020. 12. 2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 10426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

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2.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12조의2(수급자격의 상실)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활동지원 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한 때
4. 제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① 삭제 <2019. 3. 19.>

② 법 제5조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이란 6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5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문 제 점

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주민등록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하여만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나.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않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어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돌봄 공백 문제가 발생한다.

개선방향

가.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규정한 자격제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주민등록 미확인자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 이용 방안을 지침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에서는 거주불명등록 되었거나 주민등록 확인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 후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있다.

다. 또한 미혼부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판결까지 상당 시간이 걸려 아동수당,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2020년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미혼부가 유전자검사결과, 출생 신고를 위한 법원의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할 경우 지자체는 실제 양육여부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를 통해 미혼부의 자녀가 주민등록 확인이 불가능하여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라. 그렇다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에도 주민등록 미확인자에 대하여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피신청인은 제도 개선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침」 개정 및 전산시스템 보완을 건의하는 등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단 대상자 구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개선 사항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대상자 중

- (기존) 주민등록 식별 가능 대상자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입력하여 서비스 제공
- (개선) 주민등록 미식별 대상자에게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하여 서비스 제공

결 론

피신청인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침」 개정 및 전산시스템 보안을 건의하도록 의견 표명한다.

| 조치결과 (수용) |

- 중앙차원의 법정정책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침」 개정 및 전산시스템 보안을 건의(2021.2.23.)하였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기준 개선

피신청인

경기도지사(청년복지정책과)

현 황

가.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도내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병역의무자의 경우 입영으로 인해 위 지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계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5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문 제 점

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그러나 경기도 소재 대학에 입학하여 경기도를 생활 근거지로 하고 있다가 만 24세 이전 군 복무를 하게 된 청년의 경우, 이 사건 사업 지급조건(3년 이상 계속 거주)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다. 성인이 되어 학업 등의 사유로 경기도에 전입한 사람이 병역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 충족이 가능하나, 병역의무자로 입영을 한 청년의 경우 사업 지

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개선방향

가. 이 사건 사업 지급조건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성인이 되어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 입학하여 도내에 거주하게 된 청년이라면 학업기간을 고려할 때 지급조건(3년 이상 계속 거주)을 충족할 여지가 있으나, 이 중 만 24세 이전에 입영하여 영내(營內)에 기거하게 된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자의 가족이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득이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므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 따라서 군 복무 기간 동안 경기도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한 청년이 결과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평등한 처우를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수행기간을 거주요건의 예외규정으로 두는 등 기존의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신청인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본 조례」의 지급대상에 예외(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를 두어, 사업대상 선정에 불평등함이 없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권고한다.

| 조치결과 (불수용) |

-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민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의 자체 재원을 투입하는 정책이므로 필연적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요건을 두고 있고, 아울러 위장전입 방지 및 거주 기여도를 판단하기 위한 적정한 기간을 설정한 것이며,
- 道는 과거 경기도에 오래 거주한 청년 중 군복무나 학업 등의 사유로 경기도 외에 타지자체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경기도로 돌아온 청년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상 '10년이상 합산거주 요건'을 신설하여 지원 대상을 이미 확대한 바 있음.
- 향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II) 등 자동중지 복지서비스 안내 방안

피신청인

경기도지사(복지사업과)

현 황

가. 정부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자립을 위해 복지에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단순한 보호차원의 생활제도를 넘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을 마련하여 종합적 복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나. 복지서비스의 다양화로 업무담당자가 민원 응대 시 본인의 업무가 아닌 사업의 내용까지 모두 숙지하여 안내하기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나, 시스템적으로 이를 걸러주는 장치가 미비하여 중복지원이 불가한 새로운 복지서비스 대상으로 선정 시 기존의 서비스가 자동 중지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사업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가. 정의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돼 있음. 즉,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짐. 지급하는 유형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이루어져 있음.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부양의무자¹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²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됨. 즉,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³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2021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됨.

다. 지원 내용

1) 생계급여

생계급여액은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 이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2021년 기준)에 해당함.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됨.

1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2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을 더한 값

3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2]

2) 주거급여

주거 안정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됨.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함.

3)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됨. 예컨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이 이에 해당함.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됨. 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사람에게 지급됨.

【자산형성지원사업 현황】

가. 법률상 정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나. 종류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으로 구분

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1)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2)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본 사업과 목적이 다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

구분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일하는 주거 생계급여 수급청년 (만15~39세)	일하는 교육급여가구 및 차상위 가구 수급청년 (만15~39세)
본인저축	월 5/10만원	월 10만원	월 5/10/20만원	본인 의무저축 없음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적립	월 10만원
정부지원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360,000원 최대 663,000원)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최대 10만원)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377,000원, 최대 538,000원)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기타지원	민간매칭금 (본인저축시 월정액 2만원)	없음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사업단매출액) 1:1 or 1:0.5매칭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사업단수익금) 최대 15만 원	민간매칭금 (본인 저축시 1:1 매칭 월 최대 2만원)	없음

구분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1,728만원 (최대2,819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20만원 저축시) 2,268만원 (최대2,340만원)+ 이자 *본인 저축 최대720만원 포함	1,789만원 (최대 2,369만원) + 이자 *근로소득공제금 360만원 포함	최대 1,44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등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문 제 점

가. 사회복지 예산과 사업은 계속적으로 증가 및 다양화 추세이며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찾아서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까지 추구 되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복지사업 안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나. 이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몇 년 사이 기존 복지서비스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가 새롭게 시행하는 각종 복지사업을 이해하고 대상자에 대한 상담부터 지원에 이르기까지의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체감하기에 불충분한 정보 전달 등을 이유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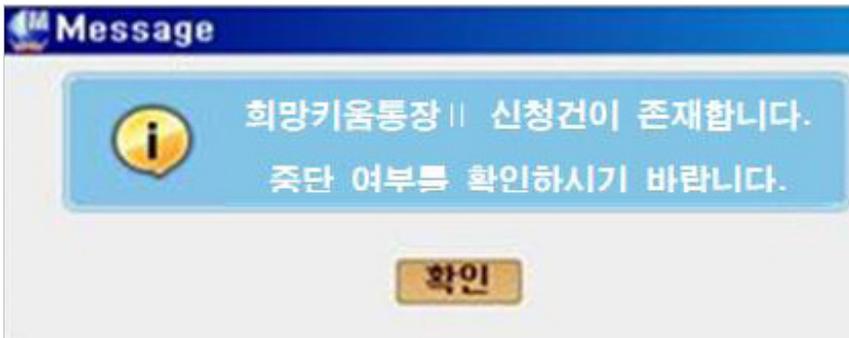
다. 구체적인 예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II 가입자가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통장 가입 자격을 상실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때 기초수급 담당 직원은 다른 복지사업의 지원 자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타 서비스 중지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함.

개선방향

가. 피신청인은 복지서비스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업무 지식이나 축적된 경험 또는 신청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중복지원 불가 사업 여부를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바, 다음에 제시하는 방법 (대안1)전산시스템 개선안, (대안2)사업 운영 지침서 개선안, (대안3)신청서 개선안을 모두 건의하여 빈틈없이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구제 방안을 강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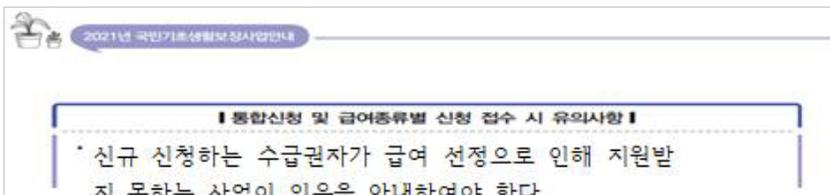
나. (대안1)전산시스템 개선안 : 행복e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 대상자 접수 시 「희망키움통장」 중단 안내 메시지 알림 방안

[예시] 전산시스템 개선- 행복e음 알림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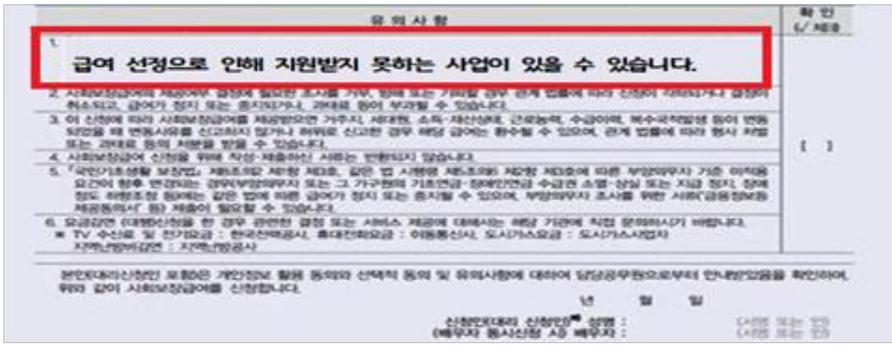
다. (대안2)사업운영 지침서 개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급여 신청 시 중복 지원받지 못하는 사업이 있음을 안내하도록 명시하는 방안

[예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서에 명시



라. (대안3)신청서 개선안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유의사항’에 급여 선정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업이 있음을 추가하는 방안

[예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서에 명시



결론

피신청인은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중복지원 불가한 새로운 복지서비스 신청 시 충분한 사전 안내로 복지급여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안1)전산시스템 개선안, (대안2)사업운영 지침서 개선안, (대안3)신청서 개선안을 모두 건의할 것을 권고한다.

| 조치결과 (수용) |

-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시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지 안내」에 관하여 적극적인 검토 및 제도개선 요청을 공문(2021.8.24.)으로 발송하였음.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처분유예 관련 법령개정 건의

피신청인

경기도지사(자산관리과)

현 황

가.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제활동 분야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공유재산 등의 체납 처분 분야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 <민원사례> B업체는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로 관리자인 A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운행 중지 및 사업장 잠정 폐쇄(영업소득 전무) 등을 이유로 사용료 미납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를 요청하였고 A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7조,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및 '코로나19 대응 해운 분야 긴급 지원 대책'을 근거로 B업체에 대하여 1년간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하였는데, 이후로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자 B업체는 추가적으로 1년의 체납처분 유예기간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규의 해석상 코로나19의 사유로는 최대 2년까지의 유예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20.>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체납처분 유예)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유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체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분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문 제 점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9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징수법」에 의거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나.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나,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다. 이때 유예기간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1년 이내로 하여야 하나, 같은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로 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유예처분이 가능한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정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의 선포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체납처분의 유예를 검토하는 것은 불가하여 코로나19 등의 예측이 어려운 질병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재량적인 판단 아래 적극적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전혀 남겨두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개선방향

가. 그간 일부 지역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으나 사실상 피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재난 상황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준하여 체납처분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나. 피신청인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아래 예시와 같은 법령으로 개정하거나 또는 구체적 법률 제안을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제할 것을 권고한다.

예시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유예기간 내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93조제2항 제2호에 준하여 체납처분 유예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신설>

예시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체납처분 유예)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유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체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분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결론

피신청인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것을 권고한다.

| 조치결과 (수용) |

-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위하여 사용·대부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례들이 발생하여, 경기도 옴부즈만이 심의의결한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처분유예 관련 법령개정 건의」를 행정안전부에 법령개정 요청(2021.10.21.)하였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및 지원횟수 제한 폐지

피신청인

경기도지사(건강증진과)

현 황

가. UN이 발표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8개국 중 198위로 2년 연속 전 세계 최하위이다. 19년 기준 0.92명, 20년 기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이와 같은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65세 인구가 총 인구의 20%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OECD는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를 '저출산 국가'로, 1.3명 이하를 '초저출산국가'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2년 1.18명 때부터 초저출산 국가에 해당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27만2400명)가 사망자 수(30만5100명)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을 겪고 있다.

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출산장려금, 무주택 신혼부부 대출, 양육수당 등) 중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대상 및 횟수 등의 한계가 있어 난임부부들의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다.

사업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나. 지원대상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021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7인	13,495,000	486,115	531,814	540,144
8인	18,185,000	634,303	661,710	816,53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1.1.1.~'21.12.31.까지 적용

다. 지원 내용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지원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4, 5회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라. 지원범위 및 보조비율

1) 지원 범위

-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시술(신선 및 동결배아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에 부담한 본인부담 비용
- 기타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지침에서 명시한 비용

2) 지자체 보조 비율

- 국가 보조 50% 경기도 25% 기초자치단체 25%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난임 극복 지원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 제 점

가.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나. 구체적으로는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등을 각 시술별 최대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각 시술비에 최대 지원 제한 금액이 있음에도 최근 5년간 매년 예산도 100% 집행되고 있어, 자녀를 갖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들에게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 그러나 난임 치료는 한 번에 성공하기 어려워 여러 번 시도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여전히 클 수밖에 없고, 정부 난임지원의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에 한정돼 있어 상당수의 맞벌이 부부는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원을 받더라도 지원 가능 시술 횟수 제한 등 현재 국가 재난 수준인 저출산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개선방향

가.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기는 전체 신생아의 10%를 넘게 차지한다. 이와 같은 정책적 필요성과 효과성에 따라 정부는 2019년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사실혼부부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지원금액과 횟수를 늘려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소득기준과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는 정책은 난임부부의 부담을 덜기에 역부족으로, 여전히 많은 난임 부부들이 비싼 시술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난임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지원, 전면적인 소득기준 폐지와 횟수 제한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나,

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출산·양육의 사회적 장애 제거와 병행하여 난임과 같은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젊은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는 특별히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이미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기존 정부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기준소득 180% 초과자도 지원하고 있으며 난임부부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2022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이 됨에 따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편으로는 도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만큼 예산 부족으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소득기준 제한과 횡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개선 사항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중

- (기존) 정부 난임지원의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횡수 제한
- (개선) 소득기준 제한 폐지/ 지원횡수 제한 폐지

결 론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과 횡수 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 조치결과 (불수용) |

- (지원횡수 폐지 관련) 2021.11.15.부터 건강보험 적용 체외수정시술 횡수가 확대(신선 7회→9회, 동결 5회→7회)되므로 2022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횡수는 확대 예정이나 지원횡수 제한 폐지는 어려움.
- (소득기준 폐지 관련) 건강보험 적용 보조생식술의 영양급여율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난임시술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어 건강보험 적용 보조생식술 영양급여율 상향 조정(70%→90%)을 건의하겠음.

수해복구 하천제방준공에 대한 경기도의 원상복구 처분취소 및 규정 위반의 하천구역결정 변경

피신청인

경기도지사(하천과), 여주시장(하천과)

신청 원인

가. 신청인은 여주시 ○○면 ○○리 ○○○-○번지(732m²)와 ○○리 ○○○번지(1,355m²)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 2013년 7월 22일~ 23일 집중호우로 주어진 범람 하여 본인 토지와 인접 토지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나. 2014년 여주시에 주어진 수해복구 공사 관련 식생블럭 및 석축공사를 건의하였으나 이행 되지 않았고, 2017년 10월 수해복구공사 촉구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접수하여 그 결과 권고조치로 여주시로부터 수해복구 공사 결정통보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신청인 소유 토지가 2012년 경기도에서 고시한 하천기본계획의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신청인은 여주시가 2018년 8월에 수해복구 공사를 완료한 후, 11월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하천구역 제척을 위해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경기도에 요청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1) 신청인은 2017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여주시 합동 현장확인 시 하천구역에 포함된 토지에 대한 하천구역 제외를 요청하였고, 주어진 수해복구 공사 후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라는 담당자의 말에 따라 2018년 11월에 변경요청을 하였으나, 결과는

이미 준공된 주어진 수해복구 공사 시 만들었던 제방의 원상복구 명령이었다.

- 2) 이에 신청인은 경기도가 하천법에서 규정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지키지 않고 하천구역으로 지정한 이 사건 토지를 제척하고, 여주시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제방을 추후 수해방지 제방공사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원상복구 하도록 한 조치는 불합리하므로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신청인 주장

- 1) 이 사건 토지는 지방하천(주어진)에 인접한 토지로 주어진은 최초 1995년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당시 제내지¹의 농경지 보호를 위한 축제(築堤)² 및 호안(護岸)³ 계획을 수립하여 치수안정성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2012년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시 현장 여건(제내지 산지 무제부⁴, 보호면적 협소, 경제성 부족 등)을 고려하여 현 상태를 유지하고 월류⁵구간을 하천구역에 편입하여 재수립하였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
- 2)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구역에 사유지가 포함될 경우 안내를 하는 별도의 행정절차는 없으나, 하천구역 내 포함되는 전체 토지(국·공유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주민 열람 및 신문 공고 등을 통해 알려주며 해당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다.(2011. 4. 7.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 개최, 여주군 금사면사무소)
- 3) 주어진은 「용담천 등 9개 하천기본계획」(2012) 재수립 하천으로, 재수립 시기는 2022년으로 예상되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년도 우선순위 발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하천 제방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지역, 즉 제방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 마을까지를 제내지라고 하며 하천을 향한 제방 안쪽 지역이라는 의미

2 독을 쌓는 일

3 강이나 바다의 기슭이나 독 따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

4 하천구간 중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

5 제방이나 방파제, 호안 등에서 물이 넘쳐흐르는 현상이나 물의 양

- 4) 여주시에에서 실시한 주어진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 「하천법」 관련 규정과 기 수립된 『주어진 하천기본계획』과 적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 설계 및 공사를 시행했어야 하며,
- 5) 만약 단서 조항인 '경미한 사항'⁶에 해당 된다고 판단했다면 그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과도하게 하천기본계획에 저촉하여 공사를 실시하여 치수안정성이 미확보된 것으로 검토된 사항이다.
- 6) 따라서 여주시는 제방공사 일부 구간에 대하여 기수립 하천기본계획과 동일하게 원상 복구 조치하고, 호안 존치 구간 및 확폭 구간에 적합한 공법을 적용하여 보완 시공하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치수 안정성 미확보로 인하여 인적·물적 등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이 사건 신청인은 201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주어진에 인접한 본인 소유의 토지가 일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2014년~2017년까지 4차에 걸쳐 여주시에 건의서 및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7년 10월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실지조사를 통해 수해복구 공사 시 신청인 소유 토지 피해를 최소화 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나. 신청인은 2017년 10월 고충민원 실시조사 시 본인 토지가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제외요청을 하였으나, 당시 경기도(하천과) 담당자는 하천구역 제외가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한다.

6 [하천법 시행령] 제29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하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하천의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말한다.(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함)

다. 여주시는 2013년 당시 호우피해 발생 후 자재선정 및 사유지 편입 등 신청인과의 이해관계로 진행하지 못한 복구공사를 신청인의 수해복구 공사 재요청과 국민권익위의 권고결정에 따라 2018년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하천 폭 및 계획홍수위 변경 등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협의 없이 공사를 하였다.

라. 수해복구 공사 준공 후 신청인은 2018년 11월 경기도에 하천기본계획 변경(하천구역 제척)을 신청하였고, 경기도는 현장 확인을 통해 수해복구 공사가 긴급한 호우피해 복구공사라도 하천기본계획상(하천구역)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넘어 과도한 공사 추진으로 판단하여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과 동일하게 원상복구를 하고, 그 외 구간에는 보완 시공을 요청하였다.

판 단

가. 신청인 소유 토지의 하천기본계획 하천구역 제척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와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소관)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며, 주어진의 경우 1995년 최초 하천기본수립 후 2012년에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면서 현장여건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현 상태를 유지하고 월류구간을 설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편입하였다.
- 2) 신청인은 2017년부터 경기도에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는 1995년과 2012년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적법한 절차와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하천구역으로 신청인의 토지를 하천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 본 위원회가 그 위법성을 확인하고 하천구역에서 제척 결정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주어진 수해복구 제방공사 원상복구 지시 관련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주어진 수해복구 제방공사는 신청인의 수해복구 공사 재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결

정에 따라 여주시에서 우기 전 완료코자 긴급하게 추진하였으나 공사담당자의 업무 미숙과 잘못된 판단으로 행정절차 미이행 등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를 위반하였다.

- 2) 이에 경기도가 준공된 제방시설 현황을 바탕으로 기술 자문의견 검토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전반적인 치수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넘어선 과도한 공사로 판단하여 제방공사 일부 구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지시한 것은 적합한 행정조치라고 판단된다. 다만, 여주시는 원상복구 조치를 할 때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하고 하천의 안정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결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며, 여주시는 수해복구 제방공사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하천의 안정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공원 비공원시설(아파트단지)의 부출입구 개설 건

피신청인

경기도지사(광역교통정책과), 수원시장

신청 원인

가. 수원 ○○공원은 1969년 6월 12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이후 공원면적의 90% 이상이 장기간 미조성 된 곳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에 따라 시설 결정 후 20년 이내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므로 수원시가 민간공원조성 특례 제도를 통하여 2016년 1월 ○○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비공원시설(공동주택)과 공원시설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나. 비공원시설은 2017년 5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근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환경적 피해 우려와 돌출위압경관 등으로 부동의 되었다. 그에 따라 비공원시설 부지가 재검토 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고, 재검토 과정에서 비공원시설의 위치는 북서측으로 이동 되었으며, 출입구는 주출입구 1개소로 확정되어 2019년 9월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2020년 1월 수원시 건축·교통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수원시 심의 과정에서 상시 부출입구에 검토가 있었으나 가변형 비상차량출입구로 결정되었다.

다. 이로 인해 북측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주출입구 이용에 따른 불편 및 1,509세대의 대단지임에도 출입구가 1개로 인해 출퇴근 시간에 교통정체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원시에 다수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부출입구 설치(가변형 비상차량출입구 상시 개방)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1) 수원시의 비공원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와 별개로 공원시설에 대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시 사전검토의견으로 부출입구 개설의견이 있었으나, 본심의 시 안건설명자의 설명을 듣고 별도 검토 및 논의 없이 평가를 마무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 후 교통영향평가 재평가를 원하며,
- 2) 진입도로에 대한 침두시 중방향 교통량에 대한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나. 피신청인 주장

- 1) 수원시 ○○공원 조성사업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2017. 11. 9. 수정의결)를 받았으나, 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인접한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환경적 피해 우려, 돌출위압경관 등으로 부동의 되어 사업내용이 변경하여 추진되었다.
- 2) 2019. 8. 20. 환경청으로부터 입지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승인관청인 수원시는 '○○공원 조성사업'과 '○○공원 비공원시설'로 구분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였으며,
 - ○○공원 비공원시설은 영향범위 및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수원시에 한정되어 수원시에서 통합심의 실시
 - ○○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교통촉진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영향범위 및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수원시-용인시로 해당하여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 수원시가 경기도에 심의 요청한 사안으로
- 3)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의 사전검토의견에 '비공원시설 부출입구 설치 방안 검토'와 '공동주택 출입구 1개소 추가 검토 및 회전교차로의 적정성 검토 바람'이 있었으나 수원시는 미수용 의견으로 회신 하였으며, 본심의 시 부출입구 설치

여부는 수원시의 ○○공원 비공원시설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할 사안으로 확인되어 부출입구 개설에 대한 의견은 미반영 되었다.

- 4) 진입도로에 대한 침두시 중방향 교통량은 수원시 ○○공원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이엔씨가 교통영향평가지침에 의거 현장조사 및 원단위를 추정하여 활동 인구 수단별, 시간대별 유출입 분포, 통행량 등을 예측하여 장래 교통량을 제시하였으며, 비공원시설은 '수원○○공원 비공원시설 교통성 검토서'에서 제시된 교통량을 반영하여 총괄적으로 교통 분야 등 전문가가 사전검토를 하였으며, 보완사항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결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중복 검토한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수원시가 2016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추진한 이 사건 ○○공원 조성사업의 총면적은 591,308㎡(공원시설 506,808㎡, 비공원시설(공동주택) 84,500㎡)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이 중 비공원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는 수원시 관할이나, 공원시설의 경우 대상사업이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걸쳐있어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다.

나. 이 사건의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은 지하2층~지상 최고 25층, 13개동 총 1,509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을 갖춘 대단지로 계획하여 분양 완료 후 건설 중에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면수 2,172대로 주출입구가 1개소로 계획되어 있다. 신청인은 비공원시설의 지형은 북저남고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지하주차장이 4개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남측에 위치한 주출입구까지 이동하는데 있어 북측에 위치한 차량 이동 시 안전 및 편의상 문제가 있으며, ○○공원의 진입도로는 공원시설(수목원, 비지터센터, 체육시설) 및 비공원 시설이 동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출퇴근 시간 및 주말에는 혼잡이 예상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 신청인은 승인관청인 수원시에 부출입구 개설(가변형 비상차량출입구 상시 개방)을 요구 하였으나, 수원시는 신청인의 부출입구 설치 요구지역은 기존 도로 폭 협소, 급경사, 주차 공간 부족 등 교통상황이 열악하여 출근시간 교통체증 등 불편 민원이 상시 발생하는 지역 이며, 부출입구 설치 시에는 교통체증 및 혼잡이 가중되고 기존 지역 주민들의 설치 반대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 화재 등 비상시에만 사용하도록 설치될 예정으로 상시 개방은 어려 운 상황이라고 회신하였다.

판 단

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시 부출입구 개설 의견 미반영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신청인은 공원시설에 대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사전 검토 과정에서 신청인이 요 구하는 부출입구에 대하여 설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일부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주장하나,
- 2) 피신청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수원시의 미수용 의견 회신을 받았고, 경기도 교통영향평 가 본심의에서도 부출입구 개설 관련 논의는 교통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를 벗어난다 는 이유로 반영하지 아니한 바 이는 적합한 판단으로 보인다.

나. 진입도로에 대한 침두시 중방향 교통량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공원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이엔씨가 교통영향평가지침에 의거하 여 산출한 교통량을 바탕으로 교통 분야 등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옴부 즈만이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부출입구 개설을 통해 아파트 입주자들이 얻는 수혜와 북측 도로연결을 통해 기존 거주자들이 받는 피해를 가늠하여 판단하는 것은 경기도 옴부즈만의 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바, 수원시에 입주예정자협의회와 기존 거주민 대표들이 참여한 사회협의체를 구 성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부출입구 개설 및 북측 도로연결과 관련된 민원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수원시에 입주예정자협의회와 기존 거주민 대표들이 참여한 사회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배수로 정비공사 관련 재정비 및 배수통로 이동 설치 요청

피신청인

경기도지사(도로건설과)

신청 원인

가. 신청인은 ○○시 ○○면에서 토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경작지 중앙에 도로 배수통로가 있어 장마기간이나 집중호우 시 사방에서 물이 내려와 경작이 어려운 상황으로, 성토와 농지 바닥에 원형 배수관을 놓는 등 노력을 했으나 매년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농작물 생산성은 저하되는 손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2021년 5월에 배수로 정비공사가 진행되었다.

나. 신청인은 공사 당시 현장 소장에게 배수관을 경작지보다 50cm 더 높여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자 배수로 정비공사 외 배수 관련 요청사항을 2021년 6월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요청사항 중 일부에 대해 불수용 답변을 회신함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1) 배수공사에 신청인 토지의 흙이 사용되어 배수관 하부로 이동 시공되었으므로 유실된 부분을 복구하고, 배수관을 경작지보다 50cm 높여 재시공할 것
- 2) 신청인 토지로 진입하기 위한 농로 확보를 위해 기 설치된 배수관의 일부를 도로쪽으로 방향을 틀어 재시공할 것

- 3) 버스정류장 뒤편 도로지는 마을주민이 농사를 지었던 곳이나, 현재 흙이 패여 있으므로 농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성토를 할 것
- 4) 신청인 토지에 배수구가 있어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하고 농지면적이 줄어 농작물 생산량이 저하되므로, 신청인 토지 인근의 도로 배수통로를 이동하거나 원형배수관 시공할 것

나. 피신청인 주장

- 1) 경작지 흙 복구 및 배수관 재시공 요청에 대하여는, 기존에 있던 배수관의 높이 등 주변 배수체계를 고려하여 현장 실정에 맞게 시공된 사항으로 배수관 재시공 및 경작지 흙 복구는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으며,
- 2) 도로쪽으로 배수관 방향 변경 시공 요청에 대하여는, 기존 도로수를 일부 깨고 배수관을 도로쪽 방향으로 변경 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 3) 버스정류장 뒤편 경작지 접근 통로 정비 요청에 대하여는, 해당부지는 도유지로서 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마을 주민들 간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였으며,
- 4) 도로 배수통로 이동 또는 원형 배수관 시공 요청에 대하여는, 현재 배수통로를 통해 배출되는 물 중 대부분이 반대편 경작지로부터 유입된다고 판단되므로 기존 도로 배수통로를 이동하거나 현재 배수로를 원형 배수관으로 시공해달라는 민원 사항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시 ○○면 ○○리 ○○○-○번지와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1' 이라 함)는 지방도 ○○○호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 라 함)와 인접해 있으며 진출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연접한 ○○리 ○○○-○번지 또는 ○○○리 버스정류장 뒤편 ○○○리 ○○○-○번지 토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며, 지목은 답이나 현장 확인 결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에만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었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도로의 도로수로 인해 이 사건 토지1이 집중호우 시 농지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2019년과 2020년에 유선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2021년 5월 4일 배수로 정비공사를 착공하여 U형 측구수로관을 설치하였다.

다. 신청인은 배수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2021년 3월 5일 피신청인에게 메일로 공사 일정을 문의하면서 사건 토지1에 약 트럭 20차 내외의 복토를 요청하였고, ○○시 ○○면 ○○리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2' 이라 함)에는 포크레인 작업 시 기존 농수로 이동정비를 요청하였다.

판 단

가. 신청인의 배수로 경작지 흙 복구 및 배수관 재시공 요청을 살펴본다.

1) 신청인은 배수로 공사로 인해 흙이 유실되었다는 이유로 복구를 요청하고 있으나, 배수로 정비공사 시작 전인 2021년 3월경 트럭 20차 정도의 성토를 이미 요청하였고 이 사건 토지1의 지면이 배수로 쪽으로 구배가 있는 것으로 볼 때 배수로 공사로 인한 흙의 유실 및 비가 많이 올 때 도로쪽 빗물과 상류쪽 빗물로 인해 흙이 많이 쓸려나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신청인은 기 시공된 배수관의 높이를 50cm 더 높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

신청인은 U형 측구 배수관의 경우 기존 배수로의 연결성과 이 사건 토지1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시공하였다는 입장인데, 통상적으로 배수관은 주변 토지의 상황과 원활한 배수기능을 고려하게 된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3) 신청인은 배수관 끝부분의 방향을 도로 쪽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신청인이 버스정류장 뒤편 토지를 통해 이 사건 토지1에 진출입 할 때 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배수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피신청인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방향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가능하다면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나. 버스정류장 뒤편 경작지 접근 통로 정비 요청을 살펴보면, 해당부지는 도유지로서 신청인이 이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목적에 맞게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통로 정비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 신청인의 도로 배수통로 이동 또는 원형 배수관 시공요청을 살펴본다.

- 1)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2에 있는 기존 농수로로 인해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하고 농지면적이 줄어들어 농작물 생산량이 저하된다며 도로 배수통로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원형 배수관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이 시행한 배수로 정비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1993년 국토지리연구원 항공사진 및 마을이장의 진술 확인에 따르면 도로 배수통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농수로로 이용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사항을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 2) 다만, 피신청인은 지방도로 관리책임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해당 배수로에 유입되는 물이 이 사건 도로에서 비롯되고 이로 인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이며, 만일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농작물 피해에 대한 입증은 신청인에게도 있음) 도로 배수통로를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경우 또 다른 배수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기존 자연 농수를 원형 배수관으로 변경할 경우 배수체계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배수로 변경으로 인한 인접 토지에 피해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3) 한편 농지 배수로의 경우 ○○시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배수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주민숙원사업으로 배수로정비사업 등의 신청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해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충분히 안내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며, 피신청인은 도로 쪽으로 배수관 방향을 틀어 재시공하는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도로점용 사용) 허가 요청

피신청인

경기도 여주시장(건설과)

신청 원인

가. 신청인1 ○○건설(주) 대표 ○○○은 지방도 ○○○호선 도로(○○시 ○○면 ○리 ○-○번지,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와 인접한 ○리 ○번지(답), ○번지(답), ○번지(답), ○-○번지(임)X이하 '이 사건 토지1'이라 한다) 상에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신청인2 ○○부동산건설(주) 대표 ○○○은 이 사건 도로와 인접한 ○리 ○-○번지(임)와 ○-○번지(임)X이하 '이 사건 토지2'라 한다)에 종교시설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신청인1과 신청인2(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는 착공 전 피신청인에게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도로점용허가*)을 하였다.

* 「도로법」 제52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 의거 도가 시군에 위임한 사무

나. 피신청인은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른, 산지에서 종단기울기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은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이므로 신청부지를 재산정할 것 등의 내용으로 보완 요청을 하였다.

다. 이에 신청인들은 ○○○에게 위임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취하하고 약 11퍼센트인 이 사건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한 구배로 연결하여 사용함이 합당하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출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1) 이 사건 도로는 현재 10.76%의 구배로 사용하는 도로이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의 도로 점용 신청지와 인접한 ○리 ○-○, ○-○번지 일대에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신고를 득하였다.
- 2) 신청인들이 이 사건 토지로의 진입을 위한 도로 점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단기울기 9% 초과 시 연결을 금지하는 규정을 일률적으로 예외없이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
- 3) 따라서 신청인들이 현 지방 도로와 기울기(10.76%)를 동일하게 하고 가·감속 차선 폭과 길이는 기준보다 넓고 길게 연장하는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니, 예외적으로 도로점용(연결) 허가를 해주기 바란다.

나. 피신청인 주장

- 1) 여주시는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면지역 지방도 및 국지도의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이 사건의 도로는 종단구배 10.7퍼센트로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산지에서 종단기울기 9퍼센트를 초과하므로 연결 허가의 금지구간에 해당한다.
- 3) 또한 가속차선이 커브구간에 계획되어 가속차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법령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연결허가신청)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도의 구간에 대하여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일방향 1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7퍼센트, 산지에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사실관계

이 사건 고충민원 신청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서, 건축허가서, 취하원, 사업계획서, 지적도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들은 여주시장(허가건축과)에 이 사건 토지1, 2 상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21. 6. 11.과 2021. 8. 4. 각각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다.

구분	대지면적 (㎡)	건축현황		용도지역	층수	건축용도	구조	비고
		건축면적 (㎡)	용적을 산정 연면적(㎡)					
이 사건 토지1	2,580	375	499.99	계획관리지역	지상2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신축
이 사건 토지2	8,925	484.98	640.77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개동 지상3	종교시설(교회)	일반철골구조	신축

나. 이 사건 토지1, 2를 비롯하여 이 사건 도로와 인접한 토지들은 각각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인데, 이 사건 도로와 토지의 높낮이 차이로 인해 현재 도로에서의 직접진·출입은 불가능하다.

다. 신청인들은 2021. 7. 20. 착공신고에 필요한 도로점용허가를 위해 피신청인에게 여주시 ○○면 ○리 ○-○, ○-○번지 등 이 사건 도로와 인접한 구간에 대하여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을 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21. 7. 29. 신청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도로점용 신청에 따른 보안을 요청하였다.

-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른 산지에서 중 단기울기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은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이므로 신청부지 재산정
- 자동염수 분사장치가 설치된 구간으로 도로점용공사로 파손될 시 장치를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필요 시 비용 청구
- 도로 구역 최외각으로 옹벽 설치
- 도로점용공사와 관련된 구조물 검토자료 제출
- 감속차선 길이 연장 및 도로 폭 확장

마. 신청인들은 2021. 10. 6.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출하였고, 같은 달 25일 경기도에 민원이 이송되었다.

바. 신청인들은 2021. 10. 26. 피신청인에게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에 대한 취하원을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날 수리 통보하였다.

판 단

가. 먼저 신청인들이 이 사건 토지1, 2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로연결허가(도로점용)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허가신청 목록에 따르면, 신청인1은 이 사건 토지1, 2를 포함한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 유사한 시기에 피신청인에게 총 11건의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중 ○○시 ○○면 ○리 ○-○번지에 대한 건축신고 수리 통보 시 이행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득할 것을 명시하였는 바,

사실상 맹지인 이 사건 토지1, 2와 인근 토지들의 진출입도로 확보 여부에 대하여 착공신고 시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이에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도로연결허가신청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한 것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호는 종단 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는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 다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피신청인이 종단기울기가 10.76퍼센트로 제출된 신청인들의 도로연결허가신청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제시한 대안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신청부지 재산정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옴부즈만은 피신청인에게 이미 일부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지된 상태인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부지로 인해 추후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결 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고, 피신청인에게는 개발행위허가 부지 방치에 따른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진출입 접속부 설치 요청

피신청인

경기도건설본부장(도로건설과)

신청 원인

가. 신청인의 부(父)인 신청외 ○○○은 지방도 ○○○호선에 인접한 경기도 ○○시 ○○면 ○○리 719-1 외 6필지(719-1(4,682㎡), 719-3(1,516㎡), 718-1(400㎡), 717-1(38㎡), 733-1(945㎡), 733-2(602㎡), 731-1(1,98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존 왕복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지방도 ○○○호선 ○○~○○(1) 도로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의 연결금지 규정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로의 직접 진출입로 설치가 불가능하자 부체도로를 개설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 기간 중 본선 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진입로를 설치하거나 향후 개발행위에 대비하여 부체도로의 폭을 확장하여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사가 완료되었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1) 이 사건 도로가 왕복 2차선일 때에는 도로에서 토지로의 직접 진출입이 가능했는데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직접 진출입이 불가능해지고 측도(부체도로)를 통해서 진출입하게 됨에 따라 불편해졌다.

- 2) 또한 동일한 공사 구간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보이는, 민원인 토지보다 위에 있는 토지(○○리 ○○○-○번지 부근, 이하 '위치1'이라 한다)와 아래에 있는 토지(○○리 ○○○-○번지 부근, 이하 '위치2'라 한다)에서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적용을 받지 않고 직접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불평등하다.
- 3) 향후 개발행위를 통한 상가 운영과 토지매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추후 건축면적 감소 등의 토지 가치가 하락되는 피해를 입었다.

나. 피신청인 주장

- 1) 해당 위치는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교차로 연결금지 구간에 해당되어 직접 진입로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측도(부체도로)를 설치하여 진출입 하도록 하였다.
- 2) 공사 구간 내 인근 토지('위치1', '위치2')와의 불평등 여부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① '위치1'(○○리 ○○○-○ 부근)

설계와 착공 시 '위치1'에는 도로나 진입로가 없었고 교차로가 아니었으나 이 사건 공사 중 사인의 개발행위(물류부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및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비관리청에 의한 공사로 현재 교차로가 형성된 사항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교차로가 아니다.

② '위치2'(○○리 ○○○-○ 부근)

해당 위치는 신호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이는 교차로가 아니라 단순히 공장으로의 안전한 진입을 위한 신호이다. 즉, 해당 위치는 교차로도 아니며 위에 위치한 다른 교차로와 관련한 연결금지 제한 거리 내에 위치하지도 않는다.

- 3) 개발행위(상가 운영계획) 제한 피해, 부체도로 확장 요청과 관련하여서는 ○○리 719-1번지 진출입로(부체도로)는 관련규정에 부합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도로사업 계획 및

설계 시 기존 이용현황(농지)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이 미래에 개발행위를 하여 상가 운영을 위한 도로의 진출입로 조성, 부체도로의 확장 등의 시행은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 또는 연결허가 등을 득하여 설치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된다.

관계법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로써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일반국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일반국도로써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 4] <개정 2014.12.29.>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

1.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도로가 교차하는 물리적인 영역과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감속차선의 경우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산정하고, 가속차선의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50	25	40
60	40	60
70	60	85
80	70	100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의 부(父)인 신청외 ○○○은 경기도 ○○시 ○○면 ○○리 일대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리 719-6(239㎡), 719-7번지(100㎡), 718-4(183㎡), 717-10번지(320㎡), 716-1번지(40㎡)는 협의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계속 농지로 이용 중이다.

나.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보면 지방도로 ○○○호선을 사이에 두고 이 사건 토지는 오른쪽에, ○○교차로는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공사 전 2차선 도로일 때는 도유지와 신청외 ○○○의 수용된 토지를 거쳐 도로에서 이 사건 토지로의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교차로 연결금지 구간에 해당하게 되어 도로에서의 직접 진출입이 불가능해지고, 피신청인이 새로 만든 측도(부체도로)를 통하여 진출입하게 되었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신청인의 불편함과 토지가치 하락을 염려하여 다음과 같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 (1) 본선 도로에서 〇〇리 〇〇〇-〇번지로의 직접 진입로 설치
- (2) 부체도로 폭을 설계(4미터)보다 크게 6미터 내지 8미터까지 확장
- (3) 위치1 또는 위치2 토지와와의 불평등 해소 요청

판 단

가.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 전에는 직접 진출입이 가능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에서 이 사건 토지로의 진출입로 설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교차로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여 진입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 당시에 도 이 사건 토지는 도로에 바로 접해 있지 않은 사실상의 맹지로서 다른 토지들을 경유하지 않고는 진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오히려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사와 함께 측도(부체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진입로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진출입 우회로 인해 다소 불편함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피해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공사 구간 내 인근 토지(위치1, 위치2)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1) 위치1의 교차로는 도로관리청인 피신청인에 의해 기 설치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 기간 중에 비관리청이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개발행위 등의 허가를 받고 비용을 부담하여 공사를 시행한 결과 형성된 교차로이며, 신청인의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 및 도로 점용허가 등을 통해 직접 부체도로 확장이 가능하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2) 위치2의 경우에는 연접한 공장 건물로의 안전한 진입을 위해 이 사건 공사 전부터 설치된 신호등이 있을 뿐 교차로라고 할 수 없으며, 인근 〇〇교차로와는 거리상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이 사건 토지와와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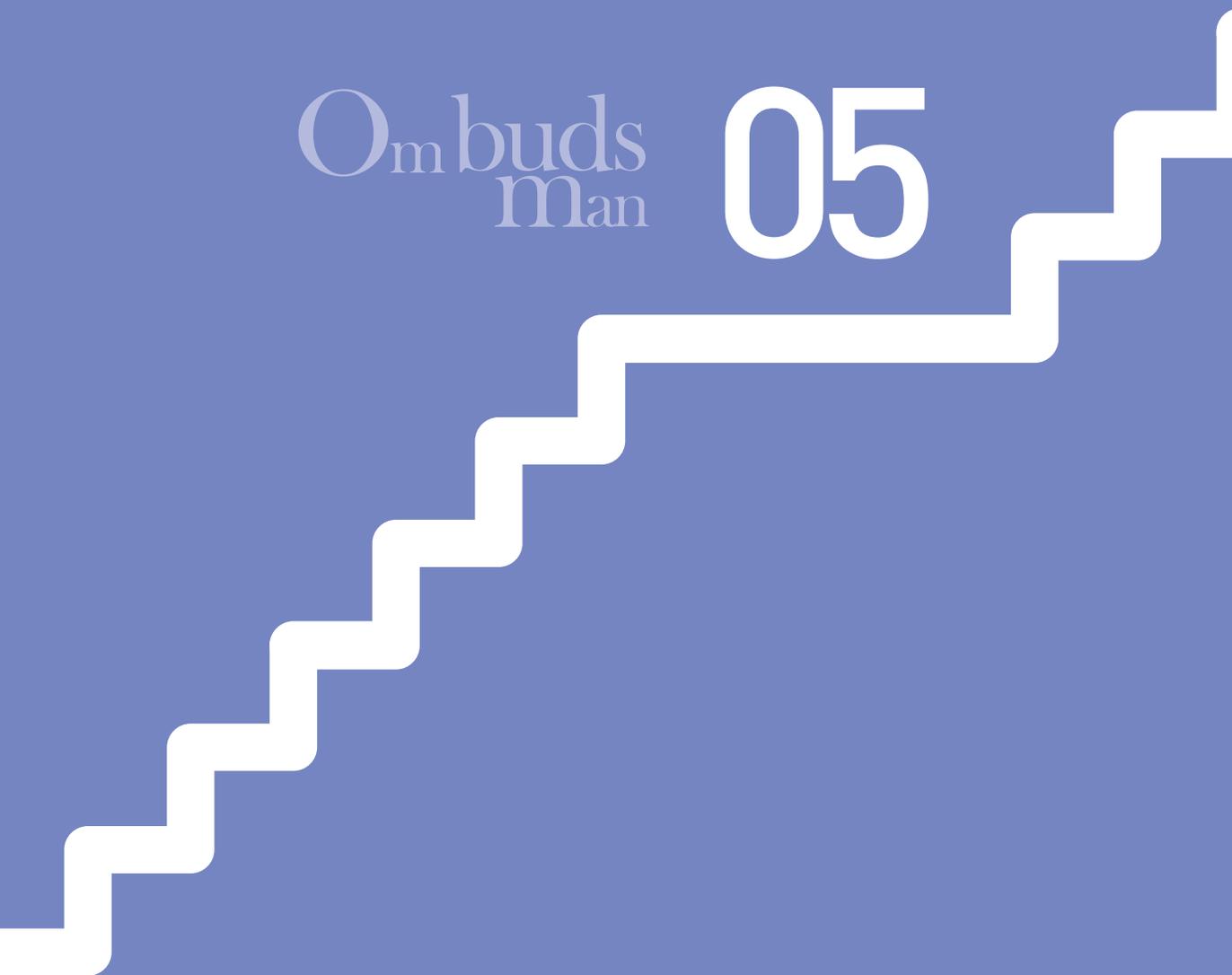
다. 신청인은 연면적 2천㎡ 이상의 건축물 신축에 대비하여 현재 4미터인 부체도로의 폭을 6 내지 8미터까지 확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신청인의 개별적인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이익을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입은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부체도로 확장 등은 필요 시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 및 도로점용 또는 연결허가 등을 득하여 시행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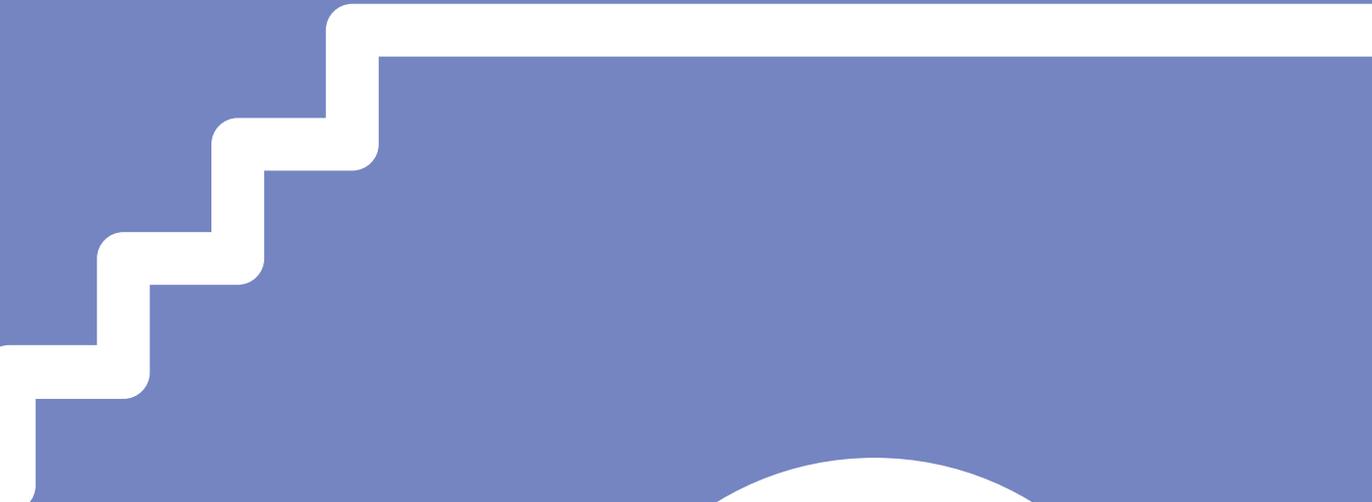
결 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Ombuds
Man

05





부 록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경기도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임·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 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도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옴부즈만”이란 도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도에 설치한 경기도고충처리위원회와 그 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4. “사무국”이란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6. “국가옴부즈만”이란 국민권익위원회에 선임되어 있는 옴부즈만을 말한다.
7. “관계행정기관등”이란 제1호의 고충민원 발생기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2장 읍부즈만 기능·구성 등

제3조(기능) ① 읍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읍부즈만 스스로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 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처리
4. 도지사 및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읍부즈만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5. 관할 시·군·구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7. 도지사 및 도의회에 읍부즈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8. 직권조사를 한 경우 도지사 및 도의회에 특별보고서 제출
9. 읍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10. 읍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11. 읍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2. 그 밖에 읍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제4조(구성) ① 읍부즈만의 정수는 10명으로 한다.

- ② 읍부즈만은 도지사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 ③ 읍부즈만은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 등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5.1.14.>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5.1.14.>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감정평가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5.1.14.>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④ 읍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 ⑤ 읍부즈만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는 새로운 읍부즈만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읍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대표읍부즈만) ① 대표읍부즈만은 읍부즈만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읍부즈만을 대표한다.

- ② 부읍부즈만은 대표읍부즈만이 지명한다.
- ③ 대표읍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읍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읍부즈만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읍부즈만은 직무범위를 각기 달리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중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15.1.14.>
 - 3. 그 밖에 대표읍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읍부즈만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 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할권) 읍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 1. 도 본청 및 소속기관
- 2.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군 본청 및 소속기관
- 3.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4.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제8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9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권익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읍부즈만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읍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읍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읍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충민원 업무 담당 국장

2. 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3. 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전국교수협회의 추천 또는 지역 대학의 총장 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4. 도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추천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지역의 협회,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서 추가로 위촉하는 경우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읍부즈만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위원회는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회의를 통해 읍부즈만을 결정한다.

⑤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부즈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문가 자문) ① 읍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읍부즈만은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읍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제15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읍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읍부즈만과 국가읍부즈만에게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6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읍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읍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읍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고충민원의 이첩) ① 읍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수탁기관의 장은 읍부즈만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읍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제15조제2항에 따라 읍부즈만과 국가읍부즈만에 대하여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호간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 협력 하에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읍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읍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읍부즈만은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도 또는 수입·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도 또는 수입·수탁기관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도 또는 수입·수탁기관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읍부즈만 사무국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도 또는 수입·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읍부즈만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할범위에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읍부즈만이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도지사 및 도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읍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도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서 정한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개정 2015.1.14.>
7. 그 밖에 읍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읍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22조(합의의 권고) ① 읍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읍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이하 "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읍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단체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4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읍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제출 기회 부여) ① 읍부즈만은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단체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단체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도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읍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결정의 통지) 읍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인 및 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읍부즈만으로부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단체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읍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단체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읍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읍부즈만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재심의) 단체장은 읍부즈만이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읍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읍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제29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도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읍부즈만은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읍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도지사 및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읍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및 도의회에 특별 보고를 할 수 있다.

제32조(국가읍부즈만과의 관계) ①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에 읍부즈만과 국가읍부즈만은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또는 중앙차원의 법정정책제도 등에 관한 사안 중 국가옴부즈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옴부즈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제33조(사무국) ① 도지사는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대표옴부즈만의 지휘를 받아 옴부즈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근무자의 인사·처우 등에 우대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4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를 지원한다.

② 도지사는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옴부즈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 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옴부즈만 운영 및 관리

제2조(옴부즈만 회의소집) ①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 6조에 따른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알리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3조(옴부즈만의 기피·회피)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대표옴부즈만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옴부즈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옴부즈만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대표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사유서를 대표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피 또는 회피로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되는 옴부즈만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4조(옴부즈만 회의 보고사항) 옴부즈만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읍부즈만의 연간 운영계획
2. 읍부즈만의 위촉 또는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3. 읍부즈만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31조에 규정된 읍부즈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5. 고충민원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6.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화해, 조정 등 중요사항
7. 읍부즈만이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8. 고충민원 처리의 실태조사와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9. 그 밖에 읍부즈만 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5조(의안 작성·배부 등) ① 사무국장은 읍부즈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대표읍부즈만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일 4일 전까지 모든 읍부즈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무국장은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의 진행) ① 읍부즈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읍부즈만 또는 사무국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대표읍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부서의 공무원·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읍부즈만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제7조(의결서 작성) ① 읍부즈만은 의결내용이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제도개선권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다.

② 읍부즈만의 의결에 참여한 읍부즈만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읍부즈만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 옴부즈만 및 배석자
3. 옴부즈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9조(결정의 통지)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옴부즈만의 결정내용을 알릴 때에는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민원처리결과 통보서에 의결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신청인과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통지 전에 관계 부서의 장에게 권고의 이행, 제도 개선 등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의 의견을 사전에 제출받을 수 있다.

제10조(재심의) ① 옴부즈만이 조례 제28조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재심을 요청받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부서의 장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재조사하여야 한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재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재심의 대상 : 옴부즈만 회의에 부침
2. 재심의 비대상 : 관계부서의 장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

제11조(감사의 의뢰) 조례 제29조에 따라 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만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관련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확인·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3장 고충민원의 접수·조사

제13조(신청 및 접수) ① 읍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우편·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읍부즈만은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문서·구술·전화·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읍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신청의 대리 등) ① 고충민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읍부즈만의 허가를 받은 자

②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청의 취하)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읍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6조(고충민원의 조사통보) 읍부즈만이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를 신청인과 조례 제7조에 따른 관할기관의 관련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기간 연장) 읍부즈만이 조례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조사의 방법) ① 읍부즈만 또는 사무국 직원(이하 "읍부즈만등"이라 한다)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읍부즈만등은 조사받는 사람에게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서면(공문 포함)·구술·녹취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③ 읍부즈만등은 피조사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성년의 여성 입회하에 조사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입회하에 조사하여야 한다.

④ 대표읍부즈만은 집단사위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유지와 읍부즈만등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조사의 중지 등) ① 읍부즈만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조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취하한 경우
4.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읍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신청인에게 조사의 중지 등의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즉시 알려야 한다.

제20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읍부즈만은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2회 이상 알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같은 사람이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결처리하고,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읍부즈만은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21조(합의) ① 읍부즈만이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합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

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자발적으로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합의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읍부즈만이 이를 확인한다.

②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읍부즈만등이 고충민원의 조사를 종료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읍부즈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읍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읍부즈만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읍부즈만 회의에 부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첩 등의 방법으로 종결처리한 후 읍부즈만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 조사 결과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수당과 여비)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읍부즈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안건 심사, 민원현장 확인·조사 등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신분증명서) ① 경기도지사는 읍부즈만 및 사무국 직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지사는 읍부즈만이 신분증명서를 분실·훼손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고 재발급할 수 있으며, 읍부즈만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국 운영

제25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안내·상담·접수 및 민원 조사·처리 지원
2. 읍부즈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읍부즈만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고충민원 편람·서식 등의 보관

5.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26조(운영상황 보고)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 운영상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
2. 옴부즈만이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내용
3. 관련부서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사무국장) ①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은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4급상당으로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 활동 지원부서의 장 또는 옴부즈만이 사무국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경우에 지방행정4급에 상당하는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의 보수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0.18.]

제5장 보 칙

제28조(옴부즈만 사무의 전결) 옴부즈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옴부즈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는 별표에 따라 대표옴부즈만 또는 사무국장이 전결처리 한다.

제29조(기록의 관리) ① 옴부즈만의 모든 기록물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

제30조(문서 및 관인) 공문서의 작성 및 그 밖의 행정업무 처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르며,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읍부즈만은 청인과 직인을 사용한다.

제31조(정보의 공개) 민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등에 의한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2조(정보의 보호) 읍부즈만등은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읍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부즈만 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읍부즈만이 정할 수 있다.

부칙 <2014.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옴부즈만 사무의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제28조 관련)

사무명	사무전결	
	사무국장	대표옴부즈만
1. 민원의 접수 가. 일반적인 사항(단순 대리인 선임 포함) 나. 집단 민원 등의 대리인, 대표자 선정 다. 신청의 보완·취하 라. 관계 부서 이첩	○ ○ ○	○
2. 민원의 조사 가. 조사 옴부즈만 결정 나. 조사의 중지·중단 다. 반복민원의 처리·종결 라. 고충민원의 각하(의결대상 제외) 마. 옴부즈만 상정 전 합의 바. 옴부즈만 상정 전 조정 사. 조사결과 보고 아. 신분증명서 발급	○ ○ ○ ○ ○ ○	○ ○ ○ ○ ○
3. 옴부즈만 운영 등 가. 회의소집 나. 의안 작성·배부 다. 의결서 작성 라. 의결서 경정 마. 회의록 작성 바. 결정의 통지 사. 재심 여부의 결정 아.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	○ ○ ○ ○ ○ ○ ○	○ ○ ○ ○
4. 권고 및 이행실태 확인 점검 가. 확인점검 계획수립 시행 나. 실태조사 및 평가 시행 다. 감사의 의뢰		○ ○ ○
5. 사무국 운영 가. 운영상황 보고서 작성 나. 파견직원 관리 다. 관인 및 기록물 관리 라. 정보공개 등 그 밖에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 ○ ○	○

경기도 옴부즈만 의결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청인 (신청인 주소)

피신청인

주문

신청취지

이유 별지와 같다.

20

대표옴부즈만 (서명)

옴부즈만 (서명)

(별지)

이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 등 주장
3. 사실 관계
4. 판단
5. 결론

경기도 옴부즈만 의결서

제목

소관기관

결정사항

이유 별지와 같다.

20

대표옴부즈만	(서명)
옴부즈만	(서명)

(별지)

이유

1. 현황
2. 관계법령
3. 문제점
4. 개선방안

○

※ 신 · 구조문대비표

가. 피신청인 통지용

경기도 옴부즈만

수신

제목 민원처리결과 통보

1. 우리 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우리 옴부즈만에서는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붙임 의결서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같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옴부즈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옴부즈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그 이유를 통보할 경우 재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 옴부즈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 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매년 도지사과 도의회에 보고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결서 1부. 끝.

경기도 대표옴부즈만

직원	팀장	사무국장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우	16444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 www.0000.go.kr
전화	() 전송 ()	/ 사무국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II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담당직원	팀장	사무국장	조사옴부즈만	대표옴부즈만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청인	피신청인
감사대상 기관	
감사의뢰 사항 (위법부당한 사실)	
참고사항	
검토결과	<p>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p> <p>20 . . .</p> <p>조사옴부즈만 (인)</p>
조치 의견	<input type="checkbox"/> 감사의뢰 <input type="checkbox"/> 감독기관 통보

고충민원 신청서

1. 신청인	성명(또는 법인·단체명칭)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2.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신청인과의 관계	
3. 피신청인	기 관 명	
	주 소	
4. 민원 제목		
5. 민원 내용		
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나. 증거·참고자료, 그 밖의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	

20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유의하실 사항

- ① 민원내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② 지면이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과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 ③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④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⑤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⑥ 신청민원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II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고충민원 접수증				
접수번호		민원제목		
신청인	성명(또는 법인· 단체명칭)		주소	
대표자 (대리인)	성명		주소	
접수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경기도 옴부즈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31-8008-XXXX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II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1. 민원번호		
2. 신청인	성명(명칭)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3. 대리인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4. 대리인을 선임하는 이유		
5.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6. 대리인의 자격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대표옴부즈만 귀하

비 교	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3. 자격 증명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

II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대표자 선정 통지서		
1. 민원번호		
2. 신청인	성명(명칭)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대표옴부즈만 귀하

비 교	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	---

신분증명서

(앞면)

제 호	신분증명서	3cm×4cm 사 진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경기도 옴부즈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직인

(뒷면)

◎ 우리 도에서는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옴부즈만이란 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이 증을 제시하면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도민들께서도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명서

(앞면)

제 호	신분증명서	3cm×4cm
성 명 :		사 진
생년월일 :		
위 사람은 경기도 옴부즈만 사무국에 근무하는 조사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직인

(뒷면)

◎ 우리 도에서는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옴부즈만이란 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이 증을 제시하면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도민들께서도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합의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합의일시	20 :
합의장소	

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II 경기도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담당직원	팀장	사무국장	조사ombudsman	대표ombudsman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청인		주소	
피신청인		접수일	20

1. 신청취지
2. 피신청인의 주장
3. 사실 관계
4. 조사ombudsman의 의견
 - 제도개선 필요 의견 없음
6. 법률구조 필요여부
 - 법률구조 필요 의견 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조사ombudsman (인)

- ※ 관계법령, 출장 결과보고서, 출석조사서 등 붙임
- ※ 다수인 관련 민원인 경우 도지사에게 별도 보고

2021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

발행일 2022. 1.

발행처 경기도 옴부즈만

기획 경기도 옴부즈만 사무국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전화 031-8008-4910~4911, 2908

홈페이지 www.gg.go.kr/ombudsman

OmBudsMan

2021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